

영케어러(Young Carer)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혼합방법 연구

최영준 (연세대학교), 김보영 (영남대학교), 김윤영 (전북대학교), 임소현 (연세대학교),
오서은 (연세대학교)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영케어러(Young Carer)는 교육과 고용을 통해 자립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장애, 질병, 정신건강, 혹은 약물 등의 문제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청년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청소년 돌봄자’와 ‘청년 돌봄자’를 합하여 영케어러로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청년이 영케어러의 주 대상에 해당되지만, 누군가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영케어러로 분류된다. 돌봄의 부담을 감당하는 영케어러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위험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 존재한다. 아직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있는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이나 돌봄 등에 대한 미숙함, 돌봄을 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원비와 생계비 이슈, 이러한 일들을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본인의 진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삶의 어려움을 겪기 쉽다(조기현, 2019, 2022).

더욱이 그들이 청(소)년 시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더 심각한 장기적 위험이 있다. 이 시기는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노동시장에서 자립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가 향후의 소득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Elango, et al., 2015).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자발적 의지가 아닌 상황적 이유로 인해 학습이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평생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즉, 아직 학습기간에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의 영케어러들이 이 시기에 돌봄을 제공함으로 인해 향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로 이전되면서 핵가족화와 가족의 해체, 정신질환의 증가나 만혼과 늦은 나이 출산 등으로 인해서 영케어러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Cooklin, 2010; Stamatopoulos, 2016). 하지만,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파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한편으로 이는 영케어러가 스스로를 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숨어있는’ 케어러(hidden carer)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myth et al., 2011).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고 있는 돌봄 부담을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거나, 낙인화될(stigmatized) 것을 우려해 영케어러로서의 상황을 동료 및 친구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다(조기현, 2022). 결국 영케어러 이슈는 모집단 자체의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정책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케어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고, 심층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여 영케어러의 실제적인 사회적 위험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이 가장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가족 구성원과 동거하는 청년을 파악하여,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청년에 비해서 소득, 고용, 우울, 박탈 등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둘째, 12인의 영케어러를 심층 인터뷰하여 이들이 놓여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어떠한 가용한 지지체계가 있는지, 왜 그러한 지지체계가 작동하지 않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국내에 출판된 관련 도서/연구들이 영케어러에 대한 현실묘사에 주력했다면(조기현, 2019, 2022; 시부야 도모코, 2021), 본 연구는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영케어러가 아닌 집단(이하 노케어러)과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이들의 상황을 객관화하고자 시도한다. 동시에 질적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지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영케어러의 정의

‘영케어러(young carer)’는 최근까지 국제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 생소한 개념이었다. 돌봄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영역으로 성장하였지만, 돌봄의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에 연구가 집중된 반면, 돌봄제공자에 대한 관심 자체는 크지 않았다. 영케어러가 본격적으로 국제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을 통해서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Brown(1989), Meredith(1991, 1992), Bilsborrow(1992), Aldridge & Becker(1993) 등은 영케어러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초기 연구를 제시하였다(Stamatopoulos, 2016, p.181). 이후 영케어러에 대한 연구는 영국 뿐 아니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다만 영케어러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령 영국에서 영케어러는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돌봄자를 지칭하며(The Children and Family Act, 2014), 이는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돌봄자(young adult carer)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반면 호주에서는 청년돌봄자를 지칭하는 별도의 개념 없이 청년영케어러가 25세까지의 청(소)년돌봄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된다¹⁾(Leu & Becker, 2017: p.759)²⁾. 미국에서는 영케어러보다는 ‘young caregiver’ 용어가 사용되며, 대체로 미국에서 아동(children)

1) <https://www.carersaustralia.com.au/about-carers/young-carers/> (2022년 7월7일 접속)
Young carers are people up to 25 years old who provide unpaid care and support to family members or friends who have a disability, mental illness, chronic condition, mental illness, an alcohol or other drug issue or who are frail aged.

2) 호주 센서스 자료에서는 15세 미만의 영케어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15세부터 24세를 대상으로 한 통계만이 제공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

으로 간주되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돌봄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Cass et al., 2010; Kavanaugh et al., 2016). 이외 기타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30세의 돌봄자까지도 영케어러에 포함되는 등 아직 영케어러의 개념적 정의는 국가마다 유동적이다(Aldridge, 2018: p.157).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Robinson et al.(2020)은 ‘가정 내에서 장애, 만성질환, 약물 및 알코올 관련 문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18세 미만의 돌봄자’를 영케어러로 정의하였다. 호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Hamilton & Redmond(2019)도 영케어러를 유사하게 정의하였으나³⁾, 그 연령범위는 8-14세로 국한하였다. Mcdougall et al.(2018)은 Carers Western Australia(2010)에 기반하여 영케어러를 ‘장애, 정신 질환, 만성 질환, 만기 질환,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문제를 가진 가족 또는 친구, 혹은 허약한 노인에게 지속적인 지원 및/또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14-25세를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위의 두 연구와 달리 돌봄의 범위를 가정 밖까지 확장하여 정의했다는 차이가 있다.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Stamatopoulos(2018)의 연구 또한 돌봄의 범위를 가정 내에 한정하지 않고, 영케어러를 ‘최소 1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시간 이상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한 돌봄자’로 정의하였다. 이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의 참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영케어러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15-29세의 돌봄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영케어러의 개념은 국가 맥락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한편, 청년돌봄자(young adult carer)는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과 전환의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돌봄 부담이 교육, 고용, 소득 등 삶의 많은 영역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당한 심각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연구적 관심은 아직 아동 및 청소년 돌봄자에 비해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Becker & Sempik, 2019).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영케어러에 대한 존재가 확인될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학문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다만 2022년 초 보건복지부는 제 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픈 가족원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는 등 최근 영케어러의 공식적인 정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이상의 기존 정의들을 바탕으로 국내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및 청년 돌봄자를 합하여 영케어러로 지칭하고자 한다. 국내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청년 시기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가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의 현실을 반영해 영케어러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게 타당하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이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파악이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34세 미만 중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3) 이들의 연구에서 영케어러는 첫째, 장애 혹은 만성질환,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 알코올 혹은 약물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고, 둘째, 그들의 질병과 장애로 인해 가정 내에서 추가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된다.

경우는 영케어러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2. 영케어러의 추정 규모 및 현황

영케어러의 규모에 대한 국제 연구들은 대체로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청년돌봄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아동 및 청소년 돌봄자의 취약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영케어러 연구가 가장 활발한 영국의 2011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영국 내에 존재하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돌봄자는 약 491,000명으로 추산된다(Foley et al., 2022: p.5). 이는 2001년과 비교하면 약 87,000명이 증가한 규모이며,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Foley et al., 2021; p.37). 이중 15세 이하 청소년 돌봄자는 약 134,000명으로, 2001년 이후 약 2만 명이 증가하였다(Foley et al., 2021; p. 38). 이는 15세 이하 아동 천 명당 잉글랜드는 11명, 북아일랜드는 14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18세부터 24세의 청년 돌봄자의 경우 2001년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Becker & Becker(2008)에서 그 규모가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229,318명)의 5.3% 정도로 나타나⁴⁾ 청소년 돌봄자보다 더 큰 규모임이 확인된 바 있다(Purcal et al., 2012: p.791).

호주의 경우, 2016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5-24세 인구 20명 중 1명(약 5.6%, 151,600명)이 영케어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6년의 5%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 한편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2021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첫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올해 초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5명 중 1명, 중학교 2학년 학생 17명 중 1명, 고등학생 24명 중 1명이 가족원을 돌보는 영케어러로 집계되었다.⁵⁾ 이렇게 일부 국가에서 영케어러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영케어러는 흔히 스스로 영케어러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다는(hidden)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모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myth et al., 2011; Purcal et al., 2012).

한편 코로나 팬데믹은 영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다방면으로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먼저, 팬데믹 전 영케어러가 제공하는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6.4시간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약 58%의 이들이 돌봄 시간의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11%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Moore, 2005b; Purcal et al., 2012; Foley et al., 2021: p. 40). 돌봄 시간뿐만 아니라 돌봄 역할의 복잡성도 높아져 영케어러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영케어러의 건강과 행복은 팬데믹 이후 상

4) 구체적인 수치는 영국 4개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웨일스가 5.7%로 청년돌봄자의 규모가 가장 크게 추정되었으며, 잉글랜드는 4.8%로 가장 적게 예측되었다(Becker & Becker, 2008).

5) SBS뉴스. 윤나라. 2021.8.29. “[취재파일] 영케어러 49만 영국, 23만 호주 ‘적극지원’... 한국은 ‘나 몰라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6162
교육플러스. 한은주. 2022.4.7. “[일본] 초6 학생 6.5% 가족 돌보는 ‘영케어러(Young Carer)’”.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5>

당 수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Leu & Becker, 2022: p. 14).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케어러가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영케어러의 약 30%가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게 되었고, 이들 중 약 40%는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Foley et al., 2021; p. 40).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케어러에서 영케어러로 전략한 사례도 더러 발견되었다(Leu & Becker, 2022: p. 14).

3. 영케어러의 취약성 영향 요인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영케어러는 부모화된 아동(parentified child)으로 그려진다(Hendricks et al., 2021). 즉, 어린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대신 오히려 부모를 돌보며 성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상당한 부담과 사회적 위험을 겪으며 또래 집단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된다(Cass et al., 2010). 특히 영케어러의 취약성은 크게 연령, 내부적 상황, 정책적 상황의 세 측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먼저, 어린 나이에 돌봄을 수행하는 영케어러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 돌봄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성인에 비해 영케어러는 활용 가능한 역량과 지식,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에 지원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돌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향후 사회 진입에 필요한 지적 능력과 역량을 쌓는 시기에 돌봄 노동에 시간을 쏟는 것은 곧 자신의 인적 자원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는 것이라는 점이 치명적이다(조기현, 2022). 더욱이 이 시기에 기회 상실은 장기적으로 고용이나 소득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Stamatopoulos, 2018).

둘째, 개인적 상황은 영케어러의 취약성을 더 높일 위험이 있다.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장애가 있는 부모⁶⁾가 있는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특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 내 돌봄 필요가 발생할 때 이를 분담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 그 책임과 불가피성이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소득 또한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외국 문헌에 따르면 영케어러는 저소득층이 지니는 사회적 위험과 높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영케어러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모든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Leu & Becker, 2017b). 그 외에도 가족 내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역 등에 따라 영케어러의 취약성이 결정되기도 한다(Stamatopoulos, 2018).

동시에, 자신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을 가족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 여겨 스스로를 영케어러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으로부터 배제될 경우 그들의 취약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Becker, 2007; Cass et al., 2010). 이러한 현상은 젠더불평등 사회의 여성에게 더욱 쉽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딸’이기 때문에 본인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

6) 유튜브에서 두 부모 모두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Kids taking care of their big family’ (Real Families) 라는 다큐멘터리는 가족의 특수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본 다큐멘터리는 2022년 5월 현재 4백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우가 그리하다. 이는 영케어러를 사회적으로 ‘숨어있는’ 케어러(hidden carer)로 만들게 된다(Smyth et al., 2011).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영케어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할 경우에도 영케어러의 취약성이 커진다. Stamatopoulos(2016)는 캐나다에서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체계적 공공정책이 부족하고, 소수 비영리 기관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이 이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질적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다른 대체 가능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양질의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위험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Leu & Becker, 2017a).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책을 통해 영케어러 개인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영케어러의 사회적 위험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들이 여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케어러는 진학과 취업 등 중요한 결정과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가족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건강, 교육·학업, 사회적 관계 및 활동, 고용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불이익을 겪게 된다(Nagl-Cupal et al., 2014). Stamatopoulos(2018)는 이렇게 영케어러가 교육·훈련, 노동 및 사회적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돌봄 제공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기회비용과 불이익을 ‘영케어러 패널티(young carer penalty)’라 표현한 바 있다.

영케어러가 겪는 불이익은 건강, 학업, 직업, 소득,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Stamatopoulos, 2016, 2018). 첫째로, 영케어러의 돌봄 부담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한번 영케어러가 되면 이들은 감정적인 어려움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Jærkestig-Berggren et al., 2019).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영케어러가 노케어러(non-young carer)에 비해 불안, 스트레스, 우울, 분노,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과 정신적 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며, 두통, 행동장애, 과잉행동 등 신체건강상으로도 여러 문제들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Jærkestig-Berggren et al., 2019; Nagl-Cupal et al., 2014; Robison et al., 2020).

구체적으로, 스코틀랜드의 11세에서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Robinson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약 12%에 해당하는 영케어러 중 10.6%가 정신 및 정서적 질환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한 반면, 노케어러는 4%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영국의 14세부터 25세의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한 Becker & Sempik(2019)의 연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45%) 영케어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목할 점은 영케어러를 성별로 구분했을 때는 남성 영케어러의 경우 30%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영케어러는 절반

가까이(47%)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영케어러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그리고 돌봄 대상자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도 영케어러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할 확률이 각각 34%p, 25%p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ecker & Sempik, 2019). 더욱이 조현병 부모를 둔 자녀들의 삶과 경험을 다룬 나티엘(2020)의 저서를 통해 살펴보면, 그들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들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에 시달리는 이중고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이를 ‘연대된 수치심(shame by associations)’이라 정의한 바 있다.

둘째, 영케어러는 돌봄 수행으로 인해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Frank et al., 1999; Hamilton & Redmond, 2019). 먼저, 학교에 재학하는 영케어러의 경우 학업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고, 결석과 지각이 잦아 학업 생활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한다. Stamatopoulos(2018)의 연구에서는 영케어러의 지난 3개월 간 결석일수가 평균 6.5일로 집계되었고, Becker & Sempik(2019)의 연구에서는 지난 2주 동안의 결석일수가 평균 2.5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영케어러의 결석 및 지각율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돌봄의 책임과 강도가 클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 Sempik, 2019).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성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Hamilton & Redmond, 2019). 실제로 Lloyd(2012)를 비롯한 선행연구에서 영케어러는 비영케어러에 비해 평균적으로 학업 성취 능력과 성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업생활의 어려움은 결국 영케어러가 학업생활을 유지하고 상위 교육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Cass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에 비해 영케어러의 중등교육과정 이수율과 대학 등 상위 교육과정으로의 진학률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영케어러가 가족을 떠나 먼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일부 맞닿아있으며, 결과적으로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선택이 제약되는 ‘limited horizons’에 해당한다(Robison et al., 2017). 더욱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자율성이 높은 대학생 영케어러의 경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교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과 도움으로부터 배제될 우려를 지닌다(Becker & Sempik, 2019).

셋째,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영케어러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돌봄 때문에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친교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Stamatopoulos, 2018). 또한 Carers Trust(2016)에서는 영케어러의 약 68%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영케어러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결석이 잦아지게 되어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een, Collingwood, & Ross, 2010). 이때 영케어러가 친구들의 따돌림과 낙인을 우려하여 자신의 상황을 다른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숨기게 될 경우,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Cass et al., 2011).

마지막으로, 영케어러가 겪는 기회와 선택의 제약은 그들의 직업 선택과 고용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 내부에서의 돌봄 수행이 외부 노동시장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Charles et al., 2012; Frank et al., 1999).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돌봄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자신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돌봄뿐이라고 믿으면서 스스로 선택의 폭을 제약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Valleau et al.(1995)은 ‘caretaker syndrome’이라 표현한다. 결국 이는 영케어러의 가정 내 돌봄 경험과 그로 인한 다양한 기회의 제약이 미래 소득 및 생활 안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Dearden & Becker, 2000). 더욱이 영케어러의 돌봄 책임은 그 자체로 노동시장 진입의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영케어러는 그 특성상 오랜 시간 집을 비우거나 멀리 이동하기 어렵고, 위급할 시 근무시간 도중에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므로(on-call nature of caregiving) 직장을 구하는 데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Dearden & Becker, 2000; Stamatopoulos, 2018). 정리하면, 영케어러는 가정 내 돌봄을 시작으로 건강, 교육, 사회적 교류, 노동시장 진입 등 여러 영역에서 계속되는 사회적 위험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영케어러 규모 및 사회적 위험 분석

1. 분석설계 및 표본

본 연구는 신규 1,800 가구가 추가된 한국복지패널데이터 7차(2012년)부터 최근 16차(2021년)까지 영케어러와 영케어러가 아닌 집단 간 현황에 관한 시계열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두 각 집단의 우울과 소득수준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존재한다.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대부분의 패널데이터는 본래 설정한 표본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attrition)하는 위험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2012년도 영케어러 수가 150명으로 추정되었으나, 2021년에는 5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모집단은 애초 저소득 대 일반소득 가구 비율이 46:54 수준으로 저소득층 과대 표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령, 15차 가구 통합표본 가처분소득 평균은 가중치를 미적용했을 때 4,025만 명이고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는 5,04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케어러의 시간적 추이를 제시할 때 손창균(2008)의 제안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여 한국복지패널데이터가 지닌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김윤영, 201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 개인 일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⁷⁾

7) 가중치 적용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창균(2008), 오미애 외(2019)를 참조할 것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널데이터에서 관찰되지 않는 개체들의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오차항을 시간에 따라 불변한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과 달리, 확률효과모형에서는 확률적으로 변동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즉, 개인 간 차이 역시 시간에 따른 고정불변이 아니고, 확률적인 변수로써 개인 간 특성에서 자유로운 임의 확률변수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서도 고정효과모형이 기각되고 확률효과모형이 채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간 차이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확률 교란항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Y_{i \cdot t} = \alpha + X_{i \cdot t}\beta + \epsilon_{i \cdot t}$$

(단, $\epsilon_{i \cdot t} = \mu_i + \lambda_t + \nu_{i \cdot t}$, $i(\text{개인}) = 1, 2, \dots, N, t(\text{년도}) = 1, 2, \dots, T$)

μ_i =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 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

λ_t = 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unobservable time effect)

$\nu_{i \cdot t}$ = 확률적 교란항(remainder stochastic disturbance term)

아래 <표 III-1>은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정리한 표이다.

<표 III-1> 변수들의 구성

| 변수명 | 측정 |
|------------------|--|
| 지역 | 서울= 1, 광역시= 2, 시= 3. 군= 4. 도농복합군= 5 |
| 성별 | 남자=1, 여자=2 |
| 교육수준 | 미취학(만7세 미만)=1, 무학(만7세 이상)=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전문대학=6 대학교=7, 대학원(석사)=8 |
|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 일반가구 =1, 저소득층= 2 |
| 주거유형 | 자가=1, 전세=2, 보증부 월세=3, 월세(사글세)=4, 기타=5 |
|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 부채 | 주거관련 부채 + 기타부채의 합 |
| 물질적 박탈 총합 | 자주 그렇다=1, 가끔 그렇다=2, 전혀 그렇지 않다=3, 모름/거부=4 |
| 음식박탈 | 있다=1 없다=2 비해당=3 |
| 주거박탈 | 있다=1 없다=2 비해당=3 |
| 의료박탈 | 있다=1 없다=2 비해당=3 |
| 교육박탈 | 있다=1 없다=2 비해당=3 |
| 신용박탈 | 있다=1 없다=2 비해당=3 |
| 건강만족도 |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만족=2, 그저 그렇다=3, 대체로 만족=4, 매우 만족=5 |
| 가족의수입만족도 | |
| 주거환경만족도 | |
| 가족만족도 | |
| 직업만족도 | |
| 사회적관계·만족도 | |
| 여가만족도 | |

| | |
|---------------------------------|--|
| 전반적 만족도 | |
| 우울수준 ⁸⁾ (CESD_11) | 전혀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다=1 종종 그렇다=2 자주 그렇다 (주 5-7일)=3 |
| 자살생각 | 지금까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예=1, 아니오=2, 모름/무응답=9 |
| 생계급여 수급여부 | 해당없음=0, 일반 수급가구=1, 조건부 수급가구=2, 특례가구=3 |
| 의료급여 수급형태 | 해당없음=0, 의료급여 1종=1, 의료급여 2종=2, 국가유공자무료=3 |
| 주거급여 수급형태 | 해당없음=0, 임차급여=1, 수선유지급여=2 |
| 건강보험 가입형태 | 직장가입자=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 지역가입자=3, 지역가입자의 세대원=4, 의료급여 1종=5, 의료급여 2종=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7, 미가입=8 |
| 바우처 이용경험 | 있음=1, 없음=2 |
| 음주 | 월 1회 이하=1, 월 2~4회=2, 주 2~3회=3, 주 4회 이상=4, 전혀 마시지 않는다=5 |
| 흡연 | 피움=1, 피우지 않음=2 |
| 근로시간 형태 | 시간제=1, 전일제=2 |
| 근로유형 | 임금근로자=1, 자영업/고용주=2, 무급가족봉사자=3,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4,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5 |
| 근로능력 | 없음= 0, 있음= 1 |

〈표 III-2〉는 영케어러의 정의에 따른 표본을 추정한 것이다. 영케어러의 조작적 정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건강만족도가 1 이하인 가구원과 함께 사는 집단’이며, 그렇지 않은 집단(이하, 노케어러⁹⁾)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2012년부터 추적해 보면 건강만족도가 1 이하인 가구원과 함께 사는 청년의 수는 2012년에는 4.4%(150명)이었으며 2021년에는 2.9%(54명)으로 추정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케어러들이 표본에서 더 탈락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8) 우울수준은 다음 11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함: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마음이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9) 본 연구에서는 영케어러에 대응하는 집단을 ‘노케어러’를 명명하였으나 아직 공식적인 학술적인 용어는 아님

〈표 Ⅲ-2〉 영케어러 비중

| 연도 | 영케어러 | 노케어러 | Total |
|-------|------|-------|-------|
| 2012 | 4.4% | 95.6% | 100% |
| 2013 | 5.9% | 94.1% | 100% |
| 2014 | 5.2% | 94.8% | 100% |
| 2015 | 3.2% | 96.8% | 100% |
| 2016 | 3.4% | 96.6% | 100% |
| 2017 | 2.3% | 97.7% | 100% |
| 2018 | 3.3% | 96.7% | 100% |
| 2019 | 4.3% | 95.7% | 100% |
| 2020 | 3.2% | 96.8% | 100% |
| 2021 | 2.9% | 97.1% | 100% |
| Total | 3.9% | 96.1% | 100% |

2. 분석 결과

1) 영케어러의 특성

〈표 Ⅲ-3〉 영케어러/노케어러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영케어러 | 노케어러 |
|------|---------|-------|-------|
| 성별 | 남 | 55% | 52.4% |
| | 여 | 45% | 47.6% |
|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14.8% | 12.3% |
| | 고졸 | 29.2% | 28% |
| | 전문대졸 이상 | 56% | 59.7% |
| 가구구분 | 일반가구 | 70.3% | 90.9% |
| | 저소득층 | 29.7% | 9.1% |
| 주거유형 | 자가 | 50% | 60.7% |
| | 전세 | 10.9% | 15.4% |
| | 보증금 월세 | 29.7% | 17.7% |
| | 사글세 월세 | 4% | 1.6% |
| | 기타 | 5.4% | 4.1% |

〈표 Ⅲ-3〉은 영케어러와 노케어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10년간 영케어러와 노케어러 모두에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은 영케어러와 노케어러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중졸 이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영케어러 교육수준이 노케어러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케어러 집단에서 저소득 가구 비율은 약 30%인 반면 노케어러는 9.1%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비교적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 주거상황도 영케어러가 더 좋지 않게 나타났다. 노케어러의 자가, 전세, 보증금월세 비율은 각각 60.7%, 15.4%, 17.7%인 반면, 영케어러는 50%, 10.9%, 29.7%로, 전반적으로 영케어러 집단의 주거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영케어러/노케어러 부채 및 가처분 소득 평균, 박탈지수

| | | 영케어러 | 노케어러 |
|--------|----|--------|--------|
| 부채 | | 2357.1 | 6712.1 |
| 가처분 소득 | | 4938.3 | 6543.3 |
| 박탈지수 | 음식 | 16.4 | 2.8 |
| | 주거 | 4.4 | 2.1 |
| | 의료 | 4 | .5 |
| | 신용 | 13 | 4.2 |
| | 교육 | 1.3 | 1.6 |

〈표 Ⅲ-4〉는 영케어러와 노케어러의 소득, 부채 및 박탈지수의 평균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영케어러의 부채와 가처분 소득 수준이 노케어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영케어러가 약 2천만원 낮게 나타났고, 부채도 3천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지수를 보면, 영케어러 집단에서 전반적인 박탈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케어러는 음식박탈(1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박탈(13), 주거박탈(4.4), 의료박탈(4), 교육박탈(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노케어러는 신용박탈(4.2), 음식박탈(2.8), 주거박탈(2.1), 교육박탈(1.6), 의료박탈(0.5) 순으로 나타나 각 항목의 박탈지수 수준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 영케어러/노케어러 만족도, 우울, 자살생각

| | | 영케어러 | 노케어러 |
|------|--------|------|------|
| 만족도 | 건강 | 3.7 | 3.9 |
| | 가족수입 | 2.7 | 3.2 |
| | 주거환경 | 3.2 | 3.6 |
| | 가족 | 3.7 | 4 |
| | 직업 | 3.2 | 3.5 |
| | 사회적 친분 | 3.7 | 3.8 |
| | 여가 | 3.2 | 3.5 |
| | 전반적 | 3.4 | 3.7 |
| | 우울 | 6.1 | 4.2 |
| 자살생각 | 0.03 | 0.01 | |

〈표 Ⅲ-5〉는 영케어러와 노케어러의 만족도, 우울, 자살생각의 점수를 보여준다. 먼저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케어러가 영케어러에 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울과 자살생각 수준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지난 10년간의 평균으로 볼 때 노케어러의 우울수준 평균은 4.2로 영케어러 6.1보다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고, 자살생각 또한 2015년부터 0.01 수준을 유지하는 등 영케어러 0.03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6〉 영케어러/노케어러 공적지원

| | | 영케어러 | 노케어러 |
|-----------|-------------|-------|-------|
| 생계급여 수급 | 해당없음 | 79.5% | 95.9% |
| | 일반수급 | 18.4% | 3.2% |
| | 조건부수급 | 2.1% | 0.9% |
| 의료급여 수급 | 해당없음 | 75.1% | 95.1% |
| | 의료급여 1종 | 13.2% | 2.1% |
| | 의료급여 2종 | 11.7% | 2.7% |
| 주거급여 수급 | 해당없음 | 76.8% | 95% |
| | 임차급여 | 22.1% | 4.6% |
| | 수선유지급여 | 0.6% | 0.3% |
| | 기타 | 0.5% | 0.1% |
| 건강보험 가입유형 | 직장가입자 | 22.1% | 25.4% |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37% | 47.6% |
| | 지역가입자 | 3.6% | 2.7% |
| |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 17.9% | 20.1% |
| | 의료급여 1종 | 9.6% | 1.7% |
| | 의료급여 2종 | 9.8% | 2.5% |
| | 국가유공자 | . | 0.01% |
| | 미가입 | . | 0.02% |
| 바우처 이용경험 | 있음 | 23.9% | 13% |
| | 없음 | 76.1% | 87% |

〈표 Ⅲ-6〉은 영케어러와 노케어러의 다양한 공적급여와 서비스 수급 여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영케어러와 노케어러 모두 비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케어러의 일반 수급자 비율이 18.4%로, 노케어러 3.2%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유사하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서도 수급 대상도 영케어러 가구에서 노케어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케어러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평균 23.2%로 노케어러(5%)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바우처 이용 경험의 경우 영케어러(23.9%)의 10년간 평균 이용경험이 노케어러(13%)보다 높게 나

타났다. 영케어러들이 공적지원 더 받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대상이 오히려 너무 좁은 것이 아닌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전에 이미 취약한 집단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질적 연구를 통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패널 분석 결과

〈표 Ⅲ-7〉 영케어러/노케어러/영케어러 더미/상호작용효과
우울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

| 변수 | 모형 1: 영케어러 우울 | | 모형 2: 노케어러 우울 | | 모형 3: 전체표본 우울 영케어러 더미 | | 모형 4: 전체표본 우울 상호작용 | |
|-------------------|----------------------|---------------------|---------------------|---------------------|-----------------------------|--|--------------------------|--|
| | | | | | | | | |
| 연령 | -0.0915 (0.40) | -0.0764 (0.10) | -0.0694 (0.09) | -0.0862 (0.09) | | | | |
| 교육수준 | | | | | | | | |
| 고등학교 | -33.55*** (10.84) | -11.93*** (3.29) | -14.03*** (3.15) | -10.50*** (3.08) | | | | |
| (ref. 중졸이하) | | | | | | | | |
| 전문대학 | -35.97*** (9.14) | -13.30*** (3.25) | -15.56*** (3.11) | -11.65*** (3.04) | | | | |
| 졸업이상 | | | | | | | | |
| 성별(여성) | 5.642** (2.85) | 3.117*** (0.78) | 3.372*** (0.74) | 3.207*** (0.71) | | | | |
| 영케어러 | | | 2.539** | -3.519*** | | | | |
| (영케어러X사회적 친분 만족도) | | | (1.28) | (0.60) | | | | |
| 사회적친분 만족도 | | | | -4.059*** (0.52) | | | | |
| 가처분소득 | 0.0281 (310) | 0.0748 (0.66) | 0.289 (0.64) | 0.549 (0.61) | | | | |
| 부채 | 2.017 (1.56) | -0.0499 (0.25) | -0.0644 (0.25) | -0.0727 (0.24) | | | | |
| 음주횟수 | -0.444 (1.48) | 0.637* (0.34) | 0.555* (0.33) | 0.771** (0.32) | | | | |
| 바우처경험 | 2.472 (3.28) | 3.113*** (0.91) | 2.900*** (0.86) | 2.596*** (0.83) | | | | |
| 근로역량 | -19.86** (8.47) | 4.173 (8.52) | -4.292 (5.14) | -4.359 (4.90) | | | | |
| 음식박탈 | 0.00295 (0.05) | -0.0148 (0.01) | -0.0170 (0.01) | -0.0190 (0.01) | | | | |
| 주거박탈 | 0.198** (0.11) | 0.0144 (0.02) | 0.0243 (0.02) | 0.0145 (0.02) | | | | |
| 의료박탈 | 0.142** (0.06) | 0.0676*** (0.02) | 0.0395** (0.02) | 0.0339* (0.02) | | | | |
| 신용박탈 | -0.0101 | -0.0100 | -0.00942 | -0.00653 | | | | |

| | | | | |
|----------|---------|---------|---------|----------|
| | (0.03) | (0.01) | (0.01) | (0.01) |
| 교육박탈 | -0.0340 | -0.0248 | -0.0258 | -0.0221 |
| | (0.05) | (0.02) | (0.02) | (0.02) |
| Constant | 46.25* | 12.54 | 21.33** | 31.35*** |
| | (25.97) | (10.82) | (8.42) | (8.14) |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Ⅲ-7〉은 영케어러와 노케어러 각 집단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영케어러 표본의 우울을 살펴본 것이 모형 1, 노케어러 표본의 우울 영향을 살펴본 것이 모형 2이며, 모형 3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영케어러 더미변수를 포함시켜 우울 변인을 추정하였다. 모형 4는 영케어러 더미변수와 사회적 친분 만족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변수는 4가지 패널모형 모두에서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력과 성별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은 중졸 이하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졸 이하보다 학력이 높을 때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전체표본으로 우울요인을 추정하였을 때 영케어러 더미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즉 영케어러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영케어러 더미와 사회적 친분 만족도 변수의 상호작용은 우울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 횟수와 바우처 경험은 모형 1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바우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수준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역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근로역량은 모형 1에서만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영케어러의 근로역량이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박탈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료박탈과 주거박탈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박탈은 4가지 패널모형 모두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박탈은 모형 1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와 노케어러 모두에서 의료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주거박탈은 그중 영케어러의 우울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Ⅲ-23〉 영케어러/노케어러/영케어러 더미/상호작용효과
소득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

| 변수 | 모형 1: | | 모형 2: | | 모형 3: | | 모형 4: | |
|--------------------------|----------|-----------|-----------|------------|-------------------|--------|-----------------|--------|
| | 영케어러 소득 | | 노케어러 소득 | | 전체표본 소득 영케어러더미 | | 전체표본 소득 상호작용 | |
| 연령 | 0.00255 | 0.0113*** | 0.0102*** | 0.00883*** | (0.01) | (0.00) | (0.00) | (0.00) |
| 교육수준 | 0.433* | 0.322*** | 0.327*** | 0.271*** | (0.25) | (0.09) | (0.09) | (0.10) |
| (ref. 중졸이하) | | | | | | | | |
| 졸업 | 0.439* | 0.512*** | 0.510*** | 0.450*** | (0.25) | (0.09) | (0.09) | (0.10) |
| 전문대학 | | | | | | | | |
| 졸업이상 | | | | | | | | |
| 성별(여성) | 0.146* | -0.0113 | -0.00139 | -0.00504 | (0.08) | (0.02) | (0.02) | (0.02) |
| 영케어러 (영케어러X사회적친분 만족도) | | | -0.119*** | 0.0152 | | | (0.03) | (0.01) |
| 사회적친분 만족도 | | | | 0.0480*** | | | | (0.01) |
| 부채 | 0.134*** | 0.0880*** | 0.0877*** | 0.0901*** | (0.03) | (0.00) | (0.00) | (0.00) |
| 바우처경험 | -0.154* | 0.0255 | 0.0233 | 0.0301* | (0.09) | (0.02) | (0.02) | (0.02) |
| 근로역량 | 0.283 | 0.104 | 0.0824 | 0.08** | (0.23) | (0.08) | (0.07) | (0.09) |
| 가구원수 | 0.281*** | 0.122*** | 0.126*** | 0.127*** | (0.04) | (0.01) | (0.01) | (0.01) |
| Constant | 5.321*** | 7.321*** | 7.283*** | 7.006*** | (0.49) | (0.14) | (0.14) | (0.16) |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Ⅲ-8〉은 영케어러와 노케어러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로그함수가 적용된 가처분 소득이며, 영케어러 표본의 소득을 살펴본 것이 모형 1, 노케어러 표본의 소득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이 모형 2이다. 또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영케어러 더미변수를 투입해 소득변인을 추정하고 영케어러 더미변수와 사회적 친분 만족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소득을 추정한 모형이 각각 모형 3과 모형 4이다.

패널분석 결과 모형 1을 제외한 3가지 패널모형에서 연령 변수는 소득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학력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은 중졸 이하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졸 이하보다 학력이 높을 때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유일하게 영케어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 1에서만 여성의 소득수준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전체 표본의 소득요인을 추정하였을 때 영케어러 더미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즉 영케어러일수록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영케어러 더미가 사회적 친분 만족도와 상호작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앞서 살펴본 영케어러의 정신건강 변인에는 사회적 친분 만족도와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소득수준에는 이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부채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소득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우처 경험은 모형 1과 4에서는 유의성을 보였으나 각 모형에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근로 역량은 모형 4에서만 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모형에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V. 영케어러 사회적 위험 및 정책 역할 심층 분석

1. 조사개요

1) 인터뷰 참여자 모집

본 연구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케어러가 실제로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케어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의 특성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 이러한 상황 대응 노력과 조건, 그 결과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영케어러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근거로 삼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의한 바대로 장애, 장기요양, 정신질환, 중독 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지고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34세 미만의 청년 10명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대상범위를 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승인을 취득하였다 (IRB 승인번호 7002016-A-2022-008-01). 연구윤리 심의 과정에서 보호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미성년자의 참여는 제외하게 되었다. 다만 미성년시기를 포함하여 34세 이전에 가족의 돌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34세 이상이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모집 과정에서 해당 연령 때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자녀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1차적으로 서울과 지방대도시 한 곳의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수개모집과 인터뷰는 7월과 8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병원과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모집

이 원활하지 않았다. 병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가족의 질병이 막 발병한 초기 상황이라 돌봄기간이 짧아 참여자로 모호한 측면이 있었고, 재활병원 등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청년을 모집해도 해당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청년이 대상자인 경우가 많지 않았고, 있는 경우라도 역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된 기간 동안 불과 4건의 참여자만 모집되는 어려움을 겪던 중에 선행 연구자(조기현, 2019, 2022)의 자문을 받아 지리정보 기반의 중고거래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간제 근로 모집 광고로 인터뷰 참여자 모집 공고를 연구진 각자 등록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루만에 7명의 대상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모집된 대상자들은 접수를 받은 연구진 별로 간단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성별균형과 돌보는 가족의 질환 및 장애 유형, 기간 등 정도를 고려하여 4명의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또한 그와 동시에 추가적인 복지기관으로부터의 모집과 선행 연구자(조기현, 2019, 2022)가 진행하는 자조모임으로부터 추천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총 12명의 사례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모집 경로별로는 복지기관에 의한 모집이 4건, 중고거래 서비스를 통한 모집이 4건,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모집이 2건, 자조모임을 통한 모집이 2건이다.

2) 인터뷰 진행과 질문 및 분석

12건의 인터뷰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각 인터뷰 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편의와 편안한 분위기를 위하여 되도록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을 하였으며 참여자가 선정하는 카페나 근방의 카페 중 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에 연구윤리 심의에 따라 작성된 인간대상 연구동의설명문을 배포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동의를 취득하였다. 동의된 내용에 따라 인터뷰의 내용은 녹음을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영케어러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담은 선행연구(조기현, 2022)를 참고하여 가족을 돌보게 된 과정, 경제적 문제와 경험, 사회적 관계의 변화, 사회적 지원 체계의 경험, 영케어러로서의 경험 등을 주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각 주제별 항목의 구성은 <표 IV-1>과 같다. 하지만 인터뷰는 인터뷰 참여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 질문을 참고하여 누락된 사항을 보충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인 Atlas.ti를 활용하여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참고하여 돌봄 과정과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맥락적 속성과 중재적 조건을 고려하여 중심현상으로서의 돌봄경험과 대응의 유형과 속성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권향원, 2016).

〈표 IV-1〉 영케어러 질적연구 인터뷰 질문의 구성

| 조사 주제 |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
|---------------|---|
| 가족 돌봄의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는 가족과의 돌봄 이전의 관계 • 돌보는 가족의 질병(사고) 발생과 간병과정 • 돌보는 가족의 질병특성과 간병부담 • 돌봄 이후 돌보는 가족과의 관계 변화 |
| 경제적 문제와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간병 등 비용 부담 • 생계 등 경제적 문제 경험 • 취업, 직장생활 상의 어려움 |
| 사회적 관계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가족과의 관계와 지원 • 교우관계, 이성관계 등 사적 관계의 변화 • 학교, 직장 등 사회적 관계의 변화 |
| 사회적 지원체계의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현장에서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지원 • 복지급여 등의 신청 여부와 경험 • 학교, 주민센터 등 공적기관에 대한 경험 • 민간보험 등 사적기관의 활용여부와 경험 • 이웃,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 지원 경험 •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 |
| 가족돌봄청년으로서의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으로 인한 생애계획이나 과정의 변화 •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 돌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사회적 위축, 개인적 성장 등) |

3) 인터뷰 참여자와 사례의 특성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모집된 인터뷰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각 사례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모두 6개월 이상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주된 돌봄 책임을 수개월 이상 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돌봄기간이나 돌봄부담의 정도 등에는 차이가 있었다. 돌봄상황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여 처음에 관계기관이나 본인이 진술했던 돌봄 대상 또는 기간과 실제 인터뷰에서 드러난 돌봄 대상 또는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사례1의 경우 어머니의 간질환으로 인해 아들이 돌보고 있는 사례로 소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년 전부터 심해진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상황이 있었다. 사례7의 경우 중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의 난소암과 오빠의 은둔으로 인한 돌봄 사례로 모집에 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어머니의 난소암은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오히려 오빠의 은둔이 돌봄상황의 중심이었으며, 실질적인 돌봄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은 6년 전 구체적인 치료의 노력이 시작된 이후로 보였다.

돌봄의 책임을 지게 된 과정도 다양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 시절 가족구성원의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증세가 위중해져서 갑작스럽게 돌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였지만 나머지 절반 이상은 이미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 때,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나 형제의 질병이 시작되어 본인의 성장과 함께 돌봄의 책임이

부과된 경우에 해당되었다. 후자의 경우 돌봄부담은 청년기에 지게 되더라도 그 상황으로 인한 학교생활, 진로 등에 대한 영향은 일찍부터 나타나게 되었으며 전자의 경우라도 돌봄의 책임이 청년에게 부과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의 배경이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이 또한 일찍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돌봄부담 정도 역시 사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돌봄부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고립을 경험한 경우나 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으면서 생활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경우, 연속된 돌봄상황으로 인해 양부모를 여의면서 친척에 의한 착취를 경험한 경우, 돌봄상황이 가족의 특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돌봄상황이 더 강한 가족결속과 본인성장의 경험으로 나타났던 경우나, 비동거로 돌봄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돌봄책임에 나섰던 경우도 있었고, 주된 돌봄책임을 가지면서도 사실상 방치하면서 방황했던 경우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돌봄기간은 출생이전이나 어렸을 때부터 존재했던 경우 평생이 될 수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성장, 취업, 가구 분리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돌봄책임이 부과된 시점으로 산정한 것으로 인터뷰 대상자가 인식하는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돌봄상황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여 기술하였다.

<표 IV-2> 인터뷰 참여자와 사례의 특성

| 연번 | 성별 | 현 직업 | 돌봄 대상 | 돌봄 상황 | 돌봄기간 |
|----|----|---------|----------|-----------------------------|---------------------|
| 1 | 남성 | 취업준비 중 | 부모 | 정신질환, 신체질환 | 4년 |
| 2 | 남성 | 가족사업 | 부모 | 신체질환 후 후유증 | 9개월 |
| 3 | 남성 | 시간제 근로 | 부모 | 정신질환 | 4년 |
| 4 | 여성 | 보육교사 | 부모, 조부모 | 신체질환 후 후유증 | 10년 |
| 5 | 남성 | 구직 중 | 형제 | 정신질환 | 7년 |
| 6 | 남성 | 구직 중 | 아버지, 어머니 | 신체질환(아버지),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어머니) | 아버지 (6개월), 어머니(6개월) |
| 7 | 여성 | 공공기관 근무 | 형제 | 정신질환 | 6년 |
| 8 | 여성 | 구직 중 | 부모 | 의료사고 후 후유증 | 10년 |
| 9 | 여성 | 시간제 근로 | 형제(비장애) | 부모1인, 형제3명 발달장애 | 4년 |
| 10 | 여성 | 시간제 근로 | 형제 | 발달장애 | 8년 |
| 11 | 여성 | 간호조무사 | 부모 | 정신질환 | 16년 |
| 12 | 여성 | 대학 재학 중 | 조부모 | 정신질환 | 3년 |

4) 연구윤리에 따른 분석내용 기술방식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상 인터뷰의 내용은 상당히 내밀하고 상세한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례별 진술내용을 인용하여 분석 내용을 기술할 때, 참여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참여자를 특정할 수도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사례는 참여자의 구성과 사례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괄적으로만 정리하고, 개별 사례를 특정할 수 있는 묘사는 최대한 배제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기

술하는데 있어서도 진술내용을 인용할 때 사례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참여자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되 분석 내용 상 인용한 진술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별도로 기술하였다.

2. 돌봄상황의 배경과 맥락

1) 돌봄상황 이전의 취약성

영케어러 인터뷰 사례에서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돌봄 책임을 안게 되기 이전부터 이미 청년시절에 통상적이지 않은 가족 돌봄의 책임을 맡게 된 배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통 가족 돌봄의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관계가 소원한 가운데 인터뷰 참여자에게 청년시절 돌봄의 책임이 부과된 조건적 상황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반드시 청년의 돌봄책임과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인터뷰 사례에서 부모의 사별이나 이혼,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가정 폭력 등 부모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저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제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고 저랑 떨어져 지내게 되시면서 삶의 의미를 잘 못 찾으시고 방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 [다른 부모]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13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돌본 부모]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 어머니 혼자서 저 학교도 보내야 되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여러모로 힘드니까 저녁에 술 한 잔씩 하시던 게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전에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술을 드시면 성격이 180도 변하셔서요. [정신질환]의 안 좋은 그런 게 있으셨어요 성격이. 저하고 [다른 부모]를 막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다른 부모]하고 부부 싸움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경험이 없거나 남은 가족의 경우에도 화목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인터뷰 사례에서 참여자들은 가족과 화목했던 추억을 찾기 어려웠다.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었고, 돌봄의 문제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인 경우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측면도 있었지만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친밀하거나 돈독한 관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엄마가 저를 좀 많이 싫어했었어요. ... 이제 엄마랑 아빠랑 별로 안 친한데, 이제 둘이 좀 많이 싸우는데, 저는 맨날 아빠가 좋아해 주니까... 엄마가 그걸

좀 싫어했어요. ... 아빠는 오빠를 좀 싫어했고 ... 그냥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형제사이) 별로 안 좋죠. ... 거의 말이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약간 [돌본 부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택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 집이 되게 화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화목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잘 넘어가니깐 그냥 계속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 [돌본 부모]가 조금 유난스럽기도 하고 원래도 조금 성격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냥 안 건드리고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온 집안이에요.

또한 사례에 따라서는 이전부터의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이미 가족이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A의 경우 다른 부모의 사별 이후에 다른 부모 쪽 가족들로부터 배제를 당하는 등 상황 등이 겹치면서 어머니가 고립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사례B처럼 이미 부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이미 관계망이 끊어져 있었으며, 사례C와 같이 부모의 질환에 정신적으로 의심될 정도의 성격상의 문제가 있어 주변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고립은 결국 청년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다른 부모]가 안 계시니까 [돌본 부모]도 의지할 곳이 필요하셨을 텐데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그동안 견디셨는데 제가 사라지면서 또 심각해진 것 같고, 믿었던 가족들한테도 배신도 당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사례A).

(질문: 돌본 부모 같은 경우는 친구나 이런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좀 없는 편인가요?) 없죠. (사례B)

저희 [돌본 부모]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 워낙 엄마가 유난스러우니까 별로 고모가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이모가 많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 하는 제스처어 자체가 저희 [돌본 부모] 심경을 되게 건드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사람한테도 ... 못 만나게 한다든지 ... (사례C)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나 부모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 질병이 결국 부모역할의 부재를 만들어서 인터뷰 참여자들의 돌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거나, 학업과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질병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 역할의 부재는 결국 청년이 돌봄책임을 안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기도 하였다. 사례A의 경우 정신 질환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돌본 부모의 무리한 행동이 결국 범죄까지 연루되어 감옥에서 신체질환이 일어나는 경우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례D의 경우에는 부모의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이나 진로에 부모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저는 [돌본 부모]가 저한테 이런 알바를 해도 되겠냐 하셨을 때 저는 이제 한 눈에 딱 이거 보이스포싱이다라는 걸 딱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여러 번 싸웠어요 하지 말라고 ... 근데 [돌본 부모]는 몰래몰래 하신거죠. (사례A)

저희 어머니도 공부에 대해서는 손을 거의 이제 안 대셨죠. 그때 이후 초등학교 이후로는요. ... 체벌이 좀 많이 심하셨어요 ...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학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아니었으니까요.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훈육을 주셔서 맨정신일 때 하실 때도 있고 술 드시고 하실 때도 있고 ... (사례 D)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도 청년이 돌봄의 책임을 지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돌봄상황 이전의 취약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이미 영케어러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질병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5명의 참여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수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이었다는 사례는 유족급여로 살아가는 상황이었으며, 인터넷 판매 가족사업을 하는 사례나 아버지가 학원강사를 했던 사례, 부모가 생전에 자영업을 하였던 사례, 아버지의 씌움이 있었던 사례 등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2) 가족으로서의 추억과 의무

그렇다고 모두 좋은 관계나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돌본 부모님과 좋은 기억과 추억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돌봄을 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억이나 추억을 이유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지고 있는 돌봄의 책임도 이러한 기억과 추억에 대한 보은(報恩)의 의미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돌본 부모]가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등산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절대 술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 저는 [다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데에는 [돌본 부모]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쁘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돌본 부모]께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키워주신 게 [돌본 부모]이어서요. 웃음 많으시고요.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같이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요. ... 친구들도 저희 아버님 많이 알아서 같이 보기도 하고요. ... 애정 표현도 많이 하셨죠. (사례3)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돌봄책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의무감을 많이 표현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여성 참여자의 경우 부모나 가족으로서의 좋은 기억이나 추억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조건 없이 그런 의무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가령 위에서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노력을 기억하고 자신이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만회의 의미로 돌봄의 책임을 진술했던 남성 참여자는 또한 외동아들로서의 의무도 언급을 하였지만 여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억 없이 다소 조건 없는 의무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사례A는 10년의 돌봄 후에 가족에 대한 실망감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로 그 당시 느꼈던 의무감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때는 사실 어려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 그냥 그때도 저는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족이 당연히 화목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아픈 사람 뭔가 가족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를 피곤하게 하거나 머리 아프게 그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 엄마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제가 컸던 것 같아요. (여성 사례A)

이러한 젠더에 따른 의무감의 차이는 남성사례A와 여성사례B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같은 순위 형제의 사이였지만 남성사례A의 경우에는 수년간 형과 동거를 하면서도 돌봄의 책임을 맡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던 경우였고, 여성사례B의 경우에는 이미 독립을 하였지만 오빠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놓지 않으려고 한 사례였다. 남성사례A 참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돌봄의무감에 대해서 스스로를 달래는 것에 가깝게 진술하는 것

에 비하여 여성사례B의 여성 참여자는 이전에 친숙하지도 않은 돌봄 형제에게 다가갈려고 하고, 부모의 포기에도 포기를 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제가 [돌봄 형제]가 좀 그렇다는 걸 조금 인식을 하면서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돌봄 형제]한테 가서 편지를 썼었나? 제가 약간 [돌봄 형제]한테 막 뭐 학교 폭력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힘내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돌봄 형제]한테 돌아왔던 답변이 저는 사실은 제 사고에서는 그 당시에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돌봄 형제]가 뭔가 아직도 못 믿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답변이 와서 [돌봄 형제]가 많이 힘들었구나를 그때 인식을 하게 됐죠. ... (저는) [돌봄 형제]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뭔가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여성사례B)

반대로 이러한 특징은 형제자매 중에서도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측면과도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또다시 참여자에게 집중적으로 돌봄책임이 부여되는 과정이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아들보다는 딸에게 돌봄이 부여되고 있었다. 가족 안에서 아들들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돌봄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진로 등을 이유로 돌봄의 책임에서 배제되고, 딸에게 그러한 책임이 부여되는 과정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관계 단절에 까지 이르렀던 여성사례A의 경우에는 돌봄의 책임이 딸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속에서까지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그냥 괜찮았었어요. 근데 대학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직업은 유학을 많이 가야 되는데 미국도 잠깐 갔다 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돌봄 부모]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 처음에는 그냥 학교를 스톱 해놓고 엄마도 몸도 안 좋고 [다른 부모] 회사도 정신없고 하다고 하니깐 들어와서 3개월씩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돌봄 부모] 병원도 같이 다니고 [돌봄 부모] 살림하고 이런 것도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부모] 회사 일도 급하면 제가 가서 조금 도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이런 일들이 당연해지면서 그냥 들어오게 됐어요. 학교를 못 마치고 ... 한 2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집에서 강하게 원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어려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뭐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금전적으로 뭐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온 집안의 뒤치닥거리를 제가 다 하고 있더

라고요. 한 20대 중반 조금 지나면서부터요. ... 또 [돌본 부모]가 제 [남성 형제]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성 형제]는 아무래도 남자니까 저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돌본 부모]가 원하는 걸 착착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돌본 부모]가 [남성 형제] 고생스러운 건 또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 약간 진짜 결정적으로 조금 그렇게 됐었던 계기가 동생 그러니까 저도 뭐를 해주고 [남성 형제]도 뭐를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시점이 왔어요. ... 저희 아빠랑 엄마가 저를 불러가지고 ○○도에 이제 어디로 불러가서 ...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 ... 내가 엄마 아빠를 여태까지 케어한 게 너무 우스운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성사례A)

3) 청년시기의 취약성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년시절 결국 가족의 돌봄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되면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나 의사결정은 제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돌봄책임을 지게 된 질병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때에도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듣지 못하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 진술 상에서는 그 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피함으로써 돌봄문제가 더욱 심화된 경우들이 있었고, 불필요한 심리적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반드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이혼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와 관련된 정확한 얘기를 듣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사례 A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경제적 관리 능력이 부족함에도 인터뷰 참여자는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를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가 [돌본 부모] 저걸 지켜봐 드렸어요. 돌아가시는 임종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몰랐는데 원래 심장 박동기가 멈추면 박동이 멈추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간호사나 의사가 와야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때 제가 좀 울분을 토함은 있었어요. 왜 안 왔냐 빨리. 왜 지금에서야 왔냐고. 저는 당시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부모]는 저한테 그냥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심장 멈추면은 그냥 소생술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돌아가시게끔 그걸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는 원망했어요. ... 제가. 그때 몰랐으니까요. ... 그때도 [다른 부모]는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이제 수급비 같은 거 나오는 걸 한 번에 다 이상한 화장품 같은 세트를 사신다거나 이거에 계획성이 없으신 거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수급

비 같은 거를 제가 받을 수는 없고 엄마 걸로 이제 나오다보니까. (사례A)

청년의 시기는 그만큼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년의 시기가 미성년자일 때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에 충분히 성숙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례A의 경우에는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어느 정도 큰 나이”라고 하였고, 사례B의 경우에는 주변에 이런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혼자 해결해야했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일찍부터 취직을 했던 사례C의 경우에는 직장 안에서 “멘탈 흔들리게 되는 말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가족에 의해서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던 사례D와 사례E의 경우였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친척에게 빼앗겼던 사례D의 경우나, 돌봄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받았던 사례E의 경우는 당시 본인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보호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십 대만 해도 자아가 완전히 성립되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뭔가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완벽히 독립을 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건 것 같아요. ...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막 되게 철이 없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나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완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나이는 한 서른 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 (막상 상황이 닥치면 대처를 적절하게) 못하고 인지를 못해요. 선생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힘든 것만 있지 이게 뭔가 부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사례E)

3. 돌봄상황의 특성과 욕구

1) 돌봄의 부담

돌봄에 대한 부담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례에 따른 차이가 있기도 했고,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은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한 때였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족이 직접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나,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인 간병이나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돌봄부담이 가장 크고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묘사되었다. 그래서 가장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사실은 일반 병동에 계시다가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돼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건데, 일반 병동에 계실 때는 보호자 한 명이 무조건 상주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병인을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저는 밤에 병원에서 자고 할머니는 낮에 오셔서가지고 저녁까지 계시고 이렇게 한 3주간 반복을 했었

는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집에서 잘 수 있고 학원 갔다가 와서 [돌봄 부모]만 보면 돼요. (일반병동 간병은) 오래 할 자신은 없을 정도로 생활이 망가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딱 접고 들어와서부터는 그냥 모든 온 집안의 뒷수발과 [돌봄 부모]의 모든 스케줄을 ...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려우신 분들은 퐁기저귀 같고 이런 일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부모님을 케어하고 이런 일에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냥 엄마한테 완전히 매여 있었죠. 24시간 같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 개인 생활이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전화가 와요. 집에서 계속 밖에 제가 있으면 일을 한다 몇 시까지 일을 해 이려고 끝잡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전화가 와요.

이러한 부담 때문에 한 사례의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하여 쓰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병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계속 별도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간병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횡포에 가까운 경험을 토로하였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있다 보니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몸이 힘들어도 직접 간병하는 편이 더 낫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간병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간병을 한 게 아니라 ○○○병원까지는 간병인을 썼습니다. 간병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핑계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는 데 비해서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툭 하면 못 하겠다, 안 하겠다하고요. 그리고 간호사실에서도 저 사람이 너무 깡패처럼 군다, 칼로 다 죽인다고 했다, 이런 험악한 얘기도 들려오고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심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그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부당했고요. ...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두 달 사이에 5명 정도가 바뀌었고 두 차례 위협이 있었습니다. ... (간병인 비용은) 하루에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이렇게도 나오고요. 비용이 상당히 나오죠.

집중적인 간병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다. 사례A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병원을 옮기기도 하고, 또 가족의 체력이나 경제적 부담을 안배하기 위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사례B

나 사례C, 사례D는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로서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참여자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저희는 일단 재활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당시 [돌본 부모]께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보니 전신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되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호흡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바로 재활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일단 모셨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어 생기는 합병증이라든지, 항생제를 너무 많이 투여해서 항생제 내성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 이후에 ○○병원에서는 재활할 컨디션이 된다고 해서 호흡기 재활을 잘한다는 □□병원에서 호흡기 재활을 시작했구요. 중간에 집으로 한 번 오셔서 한 달 정도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2주 정도밖에 자리가 없어서 2주씩 앞뒤로 두 번 갔습니다. 그 사이에는 집에서 한 달 정도 있었구요. 최근에는 [□□병원]에서 바로 [△△병원]로 넘어가서 운동 재활을 했습니다. 6주 동안의 치료 끝나고는 집으로 잠깐 모셨습니다. 저희가 연속으로 한두 달가량을 간병하니까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에 부친 상황이었어서 일단은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례A)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범 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자해 또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참여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돌본 부모]도 돈을 벌려고 ...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다가 좀 안 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광고 글을 보시고 하신 거죠. ... 이제 그걸 하다가 경찰에 걸리셨어요. ... 좀 여러 번이니까 재판을 받게 되더라고요. ... 변호사도 제 돈으로도 선임을 하고요. ... 재판장님께서서는 1년 징역을 이제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본 부모]가 집행유예 없이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이렉트로 감옥으로 가셨는데 1년 동안 계속 [돌본 부모]가 계속 약간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계속 불안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자살 시도도 해보고 어떻게든 안 가시려고 배에다가 자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질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돌봄의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한 사례의 경우 돌본 형제가 처음에는 자신이 증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복용을 임의대로 중단해서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지만 본인이 순응해서 매일 약을 복용하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특별

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고, 다른 사례에서도 돌본 부모가 병원에 다녀오면 증상이 좀 가라앉고 온순해지기도 해서 본인이 더 약을 잘 복용하도록 챙기게 되었다고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 이외에는 비동거 상태에서 돌본 형제의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를 했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어머니와 형제들이 경증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큰 딸인 자신이 남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의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던 경우 등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돌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2) 경제적 문제

직접적인 돌봄부담 이외에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는 병원비 문제였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몇 주 만에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약 중에서 단가가 5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 요양병원 입원으로 꾸준히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더라도 입원으로 인해 급여 외에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병원비 문제와 돌봄상황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경제적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하루 세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침은 거르고 학원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병원에 왔다가 저녁 먹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요새 들어서 우편물 온 거를 잘 못 보다가 어제 우편물이 하나 왔길래 열어보니까 [돌본 부모] 신용카드사에서 민사소송 한다고 서류가 왔더라고요. [돌본 부모]께서 미납하신 요금이 있는데 지금 [돌본 부모]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 그런 것 같습니다. ... 지금 하는 공부를 그냥 관두고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거의 라면이죠. 아침은 굶고, 어차피 거기서 밥을 주니까요. ... 점심은 (아르바이트하는) 백화점에서 먹고, 저녁에 와서는 거의 라면 먹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유 돈 쟁겨서 나와서 여기 고시원 들어가서 30만 원씩 내고 먹을 거 먹으면서 편의점 이제 알바 구해서 거기서 폐기(음식) 먹고 밥 대신에.

3) 학업과 사회생활에의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케어러들은 많은 경우 일찍부터 부모의 역할 부재 상황을 경험하다보니 그에 대한 영향은 일찍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A의 경우에는 형제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사례B는 [돌본 부모1] 사망

후에 [돌본 부모2]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다가, [돌본 부모2]까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의 무책임한 조치로 학업이 중단되었고, 사례C는 왕따를 당하면서, 사례D는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학업을 제대로 못했고, 사례E는 어머니의 질환과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창시절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돌본 부모2]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는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충격에 빠져서요. 그렇게 집 안에 완전 히키코모리가 됐다고 하죠. 은둔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쪽에서 저를 데리고 [지방]으로 갑니다. ... [지방]으로 가서는 고등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사례B)

초등학교 때는, 그냥 완전 전교에서 왕따를 당했었고... 잘 안 씻는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잘 씻었거든요. 근데 개네 기준에서는 이제 잘 안 씻는다고 보였나 봐요. 이제 아침에 이제 씻을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한 명씩 씻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양치만 하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개네 기준에서는 제가 안 씻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 (사례C)

진로에 관해서는 돌봄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문제로 진로준비나 학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인해, 돌봄상황으로 인해서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없거나 가족의 생계를 우선해야하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아예 부모님의 관심을 못 받은 가운데 방향을 하거나 집에서 돌봄을 담당하도록 요구받음으로써 진로에 대한 선택은 제한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 사실 육체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공부할 때 집중도 잘 안 되고요. ... [돌본 부모]가 아픈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게 힘듭니다. 제가 거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 보니까 [돌본 부모]랑 걸었던 길을 걸을 때는 마음이 특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본 부모]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본 부모]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돌본 부모]가 편찮으신데도 제가 제 할 일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준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친구가) 저보고 같이 할 생각 없냐고 그랬었는데 제 돈이 어디 있어요. ... 학원비가 말이 200, 300(만원)이지 제가 당장 이삼백만 원이 어디 있어요. 당장 생활하는 데 써야 할 판

인데.

내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내 용돈 내 돈은 내가 벌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학교를 잘 안다녔어요.) ... 그냥 아빠는 그냥 제가 계속 생산 쪽으로 가길 원하는 것 같고. 저는 생산은 하고 싶진 않아요. ... 아빠는 무조건 생산인데 ... 그냥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만 하고.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돌봄의 문제는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례A의 경우에는 처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전공에 맞게 임금수준도 괜찮은 연구원에 취업을 했지만 돌봄부담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점점 더 조건이 안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된 과정을 진술하였다. 사례B의 경우에는 처음에 의욕적으로 다녔던 회사를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의욕이 떨어지고, 회사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사례C의 경우에도 근무 중 돌봄 부모에게 계속 통화나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돌봄 부모 때문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그때 그 정직원이지만 그러니까 오전에 일하는 선생님 오후에 일하는 선생님 이렇게 나눠줘서 그래서 그때 좀 짧게 일을 했어요. ... 그 근무하는 동안에도 [돌봄 부모]랑 전화 통화를 하루에도 몇 십 통씩 했어요. 왜냐하면 [돌봄 부모]가 어디를 가서 뭔가 사고를 칠 것 때문에 ... 이제 원장님께도 그때 이제 그런 사정들을 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중간 중간 [돌봄 부모]랑 문자로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근무에 지장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례11)

대부분 인터뷰 참여자들은 본인이 겪고 있는 돌봄상황이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의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하지 못하거나, 했다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주위의 무심한 말들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경험이 학생 때 친구관계에서 있기도 했고, 이성관계나 직장에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A와 같이 결혼한 경우에도 돌봄의 상황은 결혼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회사나 주변의 동료들은 돌봄 가족 문제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친한 친구들한테만 얘기하지, 이런 거는 얘기하면 좀 서로 불편하고요. ... 항상 회사에서도 밝고 그런 이미지였어서요. ... (그렇게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를 챌 만큼 제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조금 오픈을 했으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너무 그때는 이게 막 치부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 전혀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도) 당연히 지장이 있죠. 이제 만나야 되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다 정해져 있고,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니까, 그냥 만나서 30분 1시간 만났다가 아니면 제가 일하러 가는 날에 일하러 가기 전날에 하루 쉬는 날에는 잠깐 보고 이런 게 다였어요.

4) 정신건강상의 문제

건강에 있어서는 신체적 질환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의 문제는 식사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거나, 간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목 등이 뭉치는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 문제는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결국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과도한 돌봄부담이 간병자 살이나 간병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투영하고 있었다. 반드시 돌봄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돌봄상황과 관련되어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경우(사례A, 사례B)도 있었다.

너무 힘들었죠. 혼자 다 죽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질문: 우울감에 빠지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혼자 있을 때요.

저도 정신과를 그래서 가본 적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한 32살? 32살 정도니까 한 6년? 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숨이 차고 ... [돌본 부모]랑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차 창문 4개를 다 내리고 선루프까지 열었어요. ...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데 그때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집에 있을 때도 그러고 약간, 차 안에서든 늘 그런 일이 많아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

(자살시도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저도 우울증이어서 ... (돌본 부모가 돌아가셨던) 저 한 중학교 때부터요. 그러니까 두통이 많이 심해요. 습관성, 편두통처럼 게보린을 달고 삽니다. ...이 두통이 정신의학과 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요. ... (상담을 해보니까) 일단 우울증 증세가 확실하게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 저희 돌본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방] 갔을 때, 제 기억 상에는 그때는 그

냥 얼굴이 거의 제 기억에 그냥 반 시체였어요. (사례A)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신건강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알코올 중독 등 또 다른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질문: '아 이런 게 내 삶의 낙이다.'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술이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의 진짜 일주일 7일 동안 마시고 거의 술을 매일 마셨어요.

5) 사회적 지원의 문제

돌봄상황에 직면하거나 그 상황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처할 때 접하게 되는 사회 시스템이 돌봄책임을 안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지적되었다.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의료인의 고압적인 태도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고(사례 A), 범죄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들어간 돌본 부모가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체질환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도 제대로 재판일정에 고려가 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아 결국 돌보는 청년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B). 양부모의 사망 이후 미성년자일 때 친척에 의해 보험금을 갈취당하는 상황에서도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사례C).

보험사에서 그냥 저 사인 받고 법정대리인 할머니 꺼 사인 받고. 그게 끝이니까. 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해 주세요. 이걸 왜 지금 받으세요. 나 좀 가서 받으셔도 가능하시고 미성년자이시니까 ...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셔야. 아니면 아예 안 된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부모님 거 수령을 못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 와라. 그래야지 성인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펼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성년자니까 법정대리인 데리고 와서 사인만 하면 돼요'라고 하면서 ...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악한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사례C)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해야 할 공적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복지지원을 안내해야 하고,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신청 받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한 경우에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상황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를 모르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을 제대로 안내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거기서 다른 데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 받은 게 없어요. ... 동주민센터에 찾아갔던 당일에 담당자가 출장 가서서 다른 분이 봐주셨는데 그분이 다른 곳을 연결해줄 테니까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였다.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다른 급여를 수령하는 것 때문에, 행정서류 상 교류가 없는 다른 가족의 존재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지원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단순하고 행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영케어러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사례A는 경제적 문제로 식사를 거르는 상황에서도 유족 연금을 수령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고, 사례B는 사업운영으로 인한 금융거래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비합리적인 사유로 산정특례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토로하였다. 사례C는 가족 간 분쟁으로 현금화를 할 수 없는 상속재산, 서류상의 가족존재 등의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험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A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등으로 받는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돈이고, 또한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례B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수급이 탈락하게 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사정임에도 기계적으로 급여 중단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 경험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급비도 그때 당시 2백만 원도 안 되게 들어오고 있었고... 이제 솔직히 거의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너무 좀 벅차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다 낼 것도 많은데 거기서 다 낼 거 다 빠지면은 솔직히 20만원에서 50만 원 사이거든요. ... 솔직히 쓸 게 없잖아요. 식구는 다섯 명인데, 식구는 막 다섯 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한 달에 50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먹고 자고 하는데 좀 보태줘야 좀 먹고 살죠. ... 암만 의료급여라고 해도, 산부인과 쪽으로나 중환자실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보험이 돼서 나온 것도 80만 원이에요. (사례A)

그때 기억에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원분이 저한테 와서 그거 쓰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게 중단되는 거에 대한 동의 같은 거 그거를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급비가 안 나온다. 저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거 ... 그분 말씀에는 이제

엄마가 재산도 잡히고 할머니도 부양 의무자로 들어가고 아들도 있고 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 그니까 제가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마음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니까 뭔가 내가 힘들고 이럴 때 도와준다고 보다는 저 사람들은 내가 되는 일 안 되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이구나. (사례B)

다른 서비스의 경우에도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사례A의 경우 어머니 조현병으로 인한 돌봄부담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간보호를 이용하게 될 수 있게 되어 돌봄부담을 덜게 된 경우였는데도 재심사에 대한 탈락 우려가 또 다른 불안감으로 남아있었다.

4. 돌봄상황 대응을 위한 조건

1) 가족관계의 역할

인터뷰 대상자들은 청년시기의 특성상 안정적인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변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다. 친척들이 가족의 어른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같이 상의한다던가, 정보를 제공해준다던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다. 인터뷰 사례에서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의존이 되거나, 당장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거나, 돌봄 부담을 분담하거나, 부모의 부재 상황을 보충해주는 등 다양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역할의 특징은 양부모가 다 있는 경우 주로 외가에서 도움을 주거나,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역할도 친척 중 할머니, 고모, 이모 등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모습이었다.

(주변 가족들이) 저희가 어려울 때는 도움도 주셨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사업적으로 일손이 부족할 때는 오셔서 다방면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병도 도와주셨습니다. 몇 번 꽤 오랜 기간 ○○병원에서는 한 두 달 정도 이모 분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셨고요. 친가보다는 외가 쪽이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고모고요. ... (고모들에게) 다 연락을 한번 취해 보는 거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변 친척들의 도움에 대한 한계도 지적이 되었다. 결국 비동거 가족은 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준다고 인식하고 있거나(사례A),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해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거나(사례B), 아예 왕래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사례C, 사례D), 오히려 인터뷰 참여자와 관련된 돌봄상황으로 인해

가족의 관심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원망을 듣거나(사례E) 하는 경우들도 발견이 되었다. 친척관계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이다.

솔직히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도움 받은 건 진짜로 하나도 없고요. 저 혼자 해결했고요. 고모들이 도움 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 그때 연락을 했는데요. 계속 고모들이 약간 상황이 있어서 온다 온다 하면서도 안 오시더라고요. 통화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딱 한 번 아버님 아프실 때 딱 한 번 온 적 있으세요. ... (그래서) 고모들 미워하는 감정이 좀 생겼었어요. 싫어하는 감정이 좀 생겼었거든요. (사례B)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경험으로 더욱 상처를 입게 되거나, 그나마 의지했던 가족으로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들어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가족관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이 갈취나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였다. 중고등학교 때 양부모를 모두 잃고 그 이후 2년에 걸쳐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로부터 극심한 착취를 경험한 사례A의 경우에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부모님의 사후에 금품을 갈취당하고, 보험금을 빼돌리고, 노예수준으로 노동착취까지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례B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 금전적인 부담까지도 떠안아야했던 상황들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족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와 문화가 이러한 상황에 몰리는 청년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피해에도 노출되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큰 아버지가) 그 와중에 또 짐 정리 도와준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금붙이하고 이것저것 다 챙겨갔어요. ... 저한테는 '이거 진품인지 아닌지 알려줄게' 하고 가져간 다음에 안 알려줘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장난감이어서 버렸어' 이러는 겁니다. ... 작은아버지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작은아버지가 보험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에 좀 지내다가 '이거 보험금 안 타면 다 사라진다', '빨리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보험에 관해서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친권이 필요하잖아요. ... 그래서 봤는데 큰 아버지가 딱 하니 있고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지우고 다시 할머니 쪽으로 돌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금을 다 찾으러 다니는데 보험금은 할머니 통장으로 받고 그 통장에서 현금으로 빼요. 수표로.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본인 통장에 넣었을 거예요 ... 보험금 나중에 다 타고 나서, 저를 양아들로 올리겠다고요. ...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편의점 차리고 아파트 사고요. ... (저는)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 거기서. 현대판 노예. 제가 생각하기에요. ... 해본 적도 없는 농사를 거기서 처음 해봤습니다. (사례A)

저는 (어머니를 돌보았던) 그런 선택들이 잘했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거

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끔 부모님이 유도하셨던 그 과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불합리하다 뭔가. 그리고 제가 결혼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빨리 끝내고 다시 가야지 그래서 학교를 계속 휴학해놓은 상태였어요. 학비까지 내놓고 ...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게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사례 B)

2) 주변관계의 영향

가족관계 이외에도 주변의 친구, 이성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우선 친구나 또래 등의 관계는 만나면 어려운 상황들을 잊게 해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게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하고,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족들로부터 착취를 경험한 사례A의 경우에는 친분을 유지하던 유일한 친구가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도 하고, 사례B의 경우에는 단짝 친구 한 명이 왕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친구들 만나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죠. ... 금전적인 부분은 엄청 급할 때 한두 번 정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 친구들 만나면 뭐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재밌게 친구들이랑 재밌는 얘기하고 하고요. 친구들이랑 운동을 자주 하거든요. 축구 이런 거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요. ... 친구들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돌본 가족]이 옛날에 저 20살, 21살 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친구들이 다 같이 우르르 병문안 와서 울컥했죠.

하지만 이러한 주변 관계의 역할에 대한 한계도 많이 지적되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얘기를 친구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사례A, 사례B, 사례C). 참여자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숨기거나, 회피하기도 하고, 그러한 얘기를 해봤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D, 사례E). 물론 이러한 경향이 항상 일관적으로 나타났다고보다는 성장과정에서 변화가 되기도 하였다(사례F).

친구들끼리 술자리 하다가 서로 가정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집은 이렇다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일부러 '얘기를 하겠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죠. 만취 직전 ... 속 깊은 얘기를 할 정도의 자리가 되지 않는 한 일부러 우리 집은 어떻게 먼저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두세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 별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그냥 술이죠. ... 술을 먹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 거지, 이 사람과 술을 먹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죠. 그냥 그 날 저녁에 '어디 가, 뭐 약속 있어?' '없어' '그럼 마시고 가자'. (사례B)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알기는 알아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사적인 친구들은 알기는 하지만 사적인 친구는 한두 명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다 아는 친구들은 ... 근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례E)

오히려 이성관계에서 더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거의 모든 인터뷰 참가자들이 이성교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경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한 경우가 많았고, 위로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돌봄과정에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경우,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남자친구의 양육 회피로 자녀양육의 책임을 안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성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깊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부모의 부재와 돌봄 책임 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관계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참여자 중 결혼을 한 경우가 두 명이 있었는데 모두 돌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돌본 형제의 정신질환이 발생하면서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례A의 경우 결혼 이후 그러한 질곡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돌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고, 역시 어린 시절부터 돌본 부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모의 부재와 지속적인 돌봄부담이 있었던 사례B의 경우에도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현재에도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나도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좀 같이 돌보고 같이 뭔가를 좀 해줄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사람도 좀 의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 그래서 사실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배우자]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상황들을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고 또 자기도 느끼고 그러면서 좀 저를 구해주고 싶었대요. ...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좀 제가 되게 불행해 보였던 것 같아요. ... 그래도 가장 큰 힘은 [배우자]인 것 같아요. (사례B)

또래의 친구나 이성관계 이외에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고, 친척들이 가족관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부모나 친척 중 한 명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 준 경우나, 다른 어른이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 경우들도 있었다. 사례A의 경우는 사는 곳의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의지가 되고 있는 경우였고, 사례B의 경우에는 유일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가족에게 당했던 갈취를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주었던 경우였다. 그리고 사례C에서는 이모가, 사례D에서는 할머니가 부모의 역할을 그나마 채워주었던 존재로 묘사되었다.

또한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사례가 두 사례가 있었는데 두 사례 모두 자조모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서 친구들의 경우 자신의 사정을 깊게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조모임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거를 필요도 없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까지도 공유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조모임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부터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였다.

(질문: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랑, 자조 모임에서 하는 거랑 다른가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은 자기 정상적인 부모님이 계시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힘들거나 불우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를 100%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자조모임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저를 어느 정도 서로 아니까 저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하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뭔가 서로의 앞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 [돌봄 가족]에 대해서 속상한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뭔가 가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다면 여기서는 그냥 100%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죽이고 싶었던 적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도 하니까 ... 그런 게 편하죠. 편하죠.

3) 돌봄을 위한 직업의 조건

직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돌봄상황이 직업을 유지하게 어렵게 만들거나 직업선택을 제한하고,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직장으로부터 배려를 받는 경우에는 돌봄의 책임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사례A의 경우에는 수시로 사고가 일어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직장을 계속 바꿔야했지만 상당한 배려를 받는 직장도 있었고, 사례B의 경우 돌봄책임과 본인의 불안장애 문제로 더 많은 휴가를 받고 있었다. 사례C의 경우는 본인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어느 정도 돌봄과 직장의 병행할 수 있기도 하였다.

면접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엄마가 아프신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 이제 좀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엄마가 아프고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 상황을 좀 많이 알아달라고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고. ... 원장님께도 그때 이제 그런 사정들을 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중간 중간 엄마랑 문자로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근무에 지장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직장에서 눈치를 주거나) 크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례C)

가족사업을 하는 사례A의 경우 돌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물론 돌봄부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의 존재와 돈독한 가족 관계, 돌봄을 받는 당사자의 의지와 회복의 희망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른 조건들도 많았지만 가족사업, 그 중에서도 시간활용이 유연할 수 있는 인터넷 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돌봄책임으로 인해서 직장을 계속 옮겨야했던 사례B의 참여자는 수입 때문이기도 했지만 돌봄책임과 직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기도 했다.

제가 또 일을 다니면서 목표가 생긴 게 있어서요 ... 장사를 하고 싶어서요. ... 이번에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건데 고깃집에서 일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해볼까 해요. ...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죠. 힘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고 싶어서요. ... (질문: 회사에 다니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내 가게를 여는 것도 낫겠다 생각하신 건가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 좀 했었거든요. (사례B)

5. 돌봄상황 대응의 노력

1) 공사자원의 활용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적지원제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도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들도 절반 정도 있었고, 또 절반에 가까운 사례가 LH의 청년임대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생활안정도 되고,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었거나, 돌봄책임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았거나, 다자녀 장학금, 발달치료를 위한 바우처,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미혼모를 위한 물품지원 등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사회복지관으로부터 학습지원과 경제적 후원, 가사 지원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지원을 받는 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경우들도

발견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구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므로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청년취업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해 별도가구로 보는 자립지원분리가구 제도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이러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해 소득증가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뷰 사례에서 공적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었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원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치료과정에서 담당 의사에 의해서 사회사업실로 연결되기도 하였고, 인터뷰 참여자가 결혼하고, 아버지는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서 형이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병원의 안내로 시설로 입소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병역을 위해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우울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공적지원은 돌봄상황에서 전환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돌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면서 돌본 가족의 생활도 안정되고, 돌본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사례A), 돌본가족의 돌봄문제로 한계에 다다르던 상황에서 공적서비스의 자격을 인정받아 이용하게 되면서 다시금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구세주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사례B).

요새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여차저차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깐 연계도 해주고,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 (결혼 후에) 아버지랑 [돌본 형제]랑 (같이 살면서) 계속 트러블이 생겼어요. ... 그래서 강제 입원을 새로 또 시켰죠. 시킨 와중에 아버지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시게 되고, [돌본 형제]가 못 가게 되면서 퇴원할 때쯤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 얘기했더니 병원에서 연계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만 모여서 사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연계를 해줘서 거기에 입소하게 됐죠. ... (한) 시설은 주거만 제공하고요. 낮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출퇴근 개념으로 거기서 교육 겸, 약간 치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의 교육 프로그램 ... 그것도 그런 분들만 모여 사는 그런 주거 시설이 따로 있어요. ... (지금은 돌본 형제를)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 이제 와서는 좀 신경을 쓰죠. ... (돌본 형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돌본 형제]가 저번에 강제 입원하고 나서부터 ...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사례A)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지원은 제한적이고, 모든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 대출, 민간보험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장의 생활비로 이전에 대학 재학 때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을 쓰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 병원비와

소송비용을 위해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비나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정보를 잘못 알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계약상의 제약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실비보험의 경우 일단 병원비 지불 후 사후 정산을 받는 구조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다 (보험)가입을 하긴 했었는데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약관에 없는 희귀한 질병이어서 보장이 안 됐고 실비만 쓸 수 있었습니다. ... 일단 저희가 간병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다 처리하기에는 돌아다닐 병원이 너무 많았고 지역이 너무 멀고. 저희가 업무 보면서 간병하면서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행정사에) 손을 빌렸습니다. ... (일단) 작년 거가 지급 된 거고 올해는 아직 지급을 못 받았죠. 텀이 있잖아요. 지출하고 나중에 받더라도 받은 돈을 다시 또 의료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일 것이고요.

2) 상담 및 치료

인터뷰 참여자들은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인터뷰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본 인터뷰가 처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정리도 되고, 속이 시원하게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 같은 것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한테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주시니까 속도 조금 편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엄청 깊게 파고 들지는 않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엄청 극소수예요. ... (이렇게 이야기하니)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리가 되고요. 속 시원하고요.

이러한 상담을 꾸준히 이용했던 위의 사례 모두 상당히 도움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사례A의 경우에는 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처음으로 느끼고, 스스로를 찾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례B의 참여자도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상담 선생님이) 너무 편안하시고 저한테 조언을 안 해주시진 않지만 그 조언 자체가 되게 수평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분한테 마음이 약간 많이 열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한번 하셨거든요. ... (지난 상담에서) 자기 생각에 ○○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주관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이런 식으로 사과 받을 거라고 기대조차도 못했는데 그런 류의 사과를 아예 처음 받아봤잖아요. ... 뭔가 나를 정말 특별히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버티게 해주는 힘이고 약간 관점이 많이 간혀 있었는데 ... 그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 뭔가 성장할 수 있겠다 조금씩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중이에요. (사례A)

상담서비스도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례A와 사례B의 참여자는 오히려 비전문적이고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도 진술하였다. 사례A와 같이 상담서비스로 인해 본인의 돌봄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이 더욱 어렵게 된 경우도 있었다. 사례B의 경우 공황장애에 대한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사례C의 참여자는 비전문적인 상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음을 진술하였다.

(질문: 공황장애가 왔을 때 상담을 받아보지는 않았나요?) 굉장히 정신과 상담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내 증상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그 외에 그거를 또 따로 하려면 또 상담이 뭐가 더 필요한 건지 그런 거를 깊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약간 이래가지고 제가 정신과도 그냥 한 세 번 정도 다니고 정신과 약이 뭐가 좋겠어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사례B)

사례A의 경우에는 상담 없이는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돌봄으로 인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였다.

(상담이) 이제 10회기 이렇게밖에 안 돼서 또 이제 끝나면 또 제가 또 다른 기관도 찾아보고, 또 이게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이어서 그거 지나면 또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상담을 받지) 않으면 제가 너무 우울하고 ... 마

음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가족들한테도 ...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런 내색도 안 했고 그렇지만 되게 제 안에서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남편은 그거 끝나면 돈 내고 더 다 해라 하는데 저는 이제 또 거기에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다른 거에 쓰는 게 나오니까... (사례A)

3) 경제활동과 진로준비

인터뷰 참여자들은 가족돌봄 이전부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야 했다. 또는 돌봄상황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나 돌보는 중에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틈틈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 중 상용직으로 취업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로 소득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소득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벌이를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시간제 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월 100만원 내외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도 가끔 이제 일 같은 게 들어오면 전공 관련된 일이 들어오면 엄청 그것도 엄청 눈치 보면서 이제 시간을 빼야 되니까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 틈틈이 애들 레슨도 하고 이제 연주가 있으면 연주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능력이 없는 애는 아니었거든요. 계속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되게 차곡차곡 잘 모아놨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돌봄 부모]의 그런 (무책임한) 소비 생활에 제가 맞춰서 받을 수 있었던 게 없어서. ... 고등학교 마치면 4시, 4시 반 그 정도 되니까 그때 바로 아르바이트로 가서 밤 10시에나 집에 왔거든요. ...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어요. ...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데) 그때 당시에 는 꼭 굳이 4대 보험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됐었어서, 그냥 해 주셨던 것 같아요. ... (주 소득자였던 조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학하고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야간으로 다니고 낮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거기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실습까지 했거든요. ... 소득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한 120만 원 100만 원.

생계나 자립을 위해 돈을 벌면서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돌봄과 관련되거나 돌봄에 필요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간호조무사를 준비한다던가, 가족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들이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돌봄을 위해서라

기보다는 빠르게 안정적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학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스스로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던가, 가족돌봄으로 유학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학을 계속할 수 있게 어학공부를 계속하고 돈을 모아놓는다던가 자신의 미래를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간호조무사 학원을 갔는데, ... 그때 약간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큰 형이 그쪽으로 아프고 그전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약간 투영이 된 건지 몰라도 ... 정신과에서는 남자 간호사도 조무사도 뽑으니깐요. 그래서 그거를 자격증을 따서 정신과 쪽 간호조무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지원을 한 것도 없잖아 있죠. ... 약간의 제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례5)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례A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질환이 악화되면서 취업준비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취업준비를 포기해야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단기간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제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돌본 부모]께서 술을 많이 드시니까 같이 살면 아마 시험 준비하는 데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돌본 부모]께서 이제 진짜 안 먹을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 (그래서) 내려왔는데 한 달 안 돼서 [돌본 부모]께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 저는 2년 정도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공부가 좀 잘 맞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 (질문: 재정적 도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 같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3개월 차니까 제 수준을 아직 모르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이면 제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가 원하는 거니까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 (지금은) 공부를 그만둬야 될지 계속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례A)

4) 자기관리와 의지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동력으로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낼 수 있고, 또한 해내야만 한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진다거나 오기나 책임감으로 버틴다는 것이다.

(질문: 지금 가장 의지가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봤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 어떻게든 열심히 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

든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바라시는 건 제가 잘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든지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질문: 본인은 어떻게 그걸 견뎠나요?) 그냥 지금 힘들어도 뭐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죠 ... 뭔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좀 더 잘 해야겠다는 어떤 다짐? ...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성공해봐야겠다 이런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죠. ...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다.

또한 돌봄의 책임을 안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관리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다. 사례A는 공황발작 증세를 스스로 관리를 하였고, 사례B는 본인의 불안장애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수면에 신경을 더 썼으며, 사례C는 자신의 불행한 마음을 극복하고자 스스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별도의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D의 경우는 운동을 하였고, 사례E의 경우는 연기를 했는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환경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례C)

운동도 한 번씩 하는데 운동할 때도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 대학교 때는 [운동]을/를 전공했었고, ○○에 와서는 헬스장 한 번씩 다닙니다. (사례D)

거기서 제가 연기 학원도 다녔거든요. 무대에도 서보고 그러면서 좀 약간 나아졌어요. ... 그때는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게 약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사례E)

5) 상황 회피

인터뷰 참여자들이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회피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아예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몇몇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례A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사망 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돌봄의 책임을 최대한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사례B와 사례C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해서 적극적으로 탈출을 한 경우였다. 사례B는 가족에 의한 착취가 2년 가까이 지속된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모습에 위기감에 직면했고, 사례C는 가족으로서의 자신과 자산의 10년간의 돌봄에 대해 부정을 당하면서 받게 된 극도의 스트레스 끝에 탈출한 경우였다.

집에 더 살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들을 내가 느끼고 나서는 여기서 살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 그런데다가 이제 나를 병들게 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병들게 한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엄마나 아빠나 [남자 형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갇아 먹고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 6개월은 몸이 아프고 6개월은 몸을 치료를 하러 다녔어요. 그게 한 1년이 그게 1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그 10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잃고 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외국1]로 다시 나가기에는 [외국1]은 금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어디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여행을 좀 갔다 와야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외국2]를 갔어요. (계획은) 전혀 전혀 없고 그냥. (사례C)

위의 사례와 같은 직접적인 회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돌봄부담에서 거리를 두거나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독립을 해서 거리를 두고 상황을 다시 인식하여 해결의 노력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상황에 거리를 두기 위해 독립을 하더라도 다시 돌봄책임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거리를 두지 못하는 사례에서는 하루라도 편하게 있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6. 돌봄상황의 결과

1) 가족관계의 변화

돌봄의 경험은 가족관계를 다시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돌봄책임 안기 전부터 이미 가족관계가 소원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생기거나, 서로 애정이나 관심을 느끼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나타났던 사례A의 경우 부모 자녀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나타나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갈등과 학대의 경험이 있던 사례B의 참여자도 돌봄의 기간만큼은 행동이 개선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던 기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돌봄 부모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많은 사례C의 경우에도 돌봄 부모가 신체질환으로 입원했

던 때를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례D는 돌본 형제를 치료하기 위해 같이 있었을 때 평안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돌본 부모를 돌보게 된 이후 가족관계가) 확실히 더 돈독해졌습니다. ... 전에는 두 분 사업이 어려웠을 때 제가 이거를 살려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원망 비슷한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노력해서 한 마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고맙더라고요. ... 계속해서 이겨내 오는 과정이었고 거기에서 큰 게 하나 딱 온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겨내고 있으니 ... 전에는 뭔가 조금만 어려워도 막 되게 막 흔들리고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웬만한 걸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싶습니다. ... (우리 가족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싫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어머니도 싫다고 하실 수 있고 아버지도 싫다고 하실 수 있고 저도 싫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마음이 딱 맞아떨어져서 힘이 합쳐지니까요. (사례A)

사실 작년에는 [돌본 형제]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본 형제]가 오는 게 저한테도 되게 정서적으로 의지가 진짜 많이 됐어요. 제일 편했어요 오빠랑 있을 때가. (사례D)

하지만 과도하고 부과된 돌봄책임은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A와 사례B, 사례C에서는 계속되는 돌봄부담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D에서는 부담한 돌봄부담에서 벗어나려고 가족관계를 단절한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질문: 돌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지는 않나요?) 많이 있었죠. 원망보다는 조금 미워했죠. 계속 그러다 보니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돌본 부모]한테만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 (하지만) 병을 타하는 거지 아버님 자체를 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한순간만 확 짜증을 내거나 하고요 그 다음날이면 또 괜찮아지고요. (사례B)

2) 성장과 지체

돌봄경험을 통해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사례A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례B는 아버지의 상태 호전에 따라 강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C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포레들이 자신에 비해 사회에 대해서 더 잘 모르고, 위축되어있다고 느끼기도 했고, 사례8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더 자신을 보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서울에 와서 혼자 지내보니까 제가 지금 사실 하는 일이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건데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약간 오히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느냐며 저보다도 정보를 모르고요. 그리고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 서울에 살면은 자극이 너무 많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많고 진짜 자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서울에 와서는 제가 진짜 많이 흔들렸는데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지내고 있고 말도 잘 하고 그런데 본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힘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 (사례C)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았다. 돌봄상황 전후로 부모의 부재 상황에서 성장하고,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통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하고, 때로는 돌봄부담으로 인해서 주변과 거리를 두거나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욱 위축되거나,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례A는 이러한 경험으로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였고, 부모의 부재와 어른으로부터의 착취를 경험한 사례B의 참여자는 감정조절이나 돈 관리, 과도한 눈치, 사람에 대한 불신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사례C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경계심이나 자신감 등의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사례D의 경우는 사회생활에서 예민해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전역하고 나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성격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무대포가 저의 장점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했어요. 그 친구의 친형이 있는데 처음 저의 무모한 면을 되게 좋게 봐줬었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A)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들 때문에 그런지 뭔가 그 일을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 제가 피해를 받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재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례D)

3) 회복과 불안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회복하고 있었다. 이제 막 돌봄

상황이 심화되기 시작한 사례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은 경우들이었다. 이는 인터뷰 참여자 모집 과정 중에 나타난 특징을 반영했다고 보여지기도 하였다.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복지기관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에 해당자를 찾아도 인터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에도 집중적인 간병이 이루어지는 등의 극한의 상황들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과거의 일이었다. 인터뷰를 참여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거나, 기존의 상담 등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인터뷰 사례들 중 새롭게 삶의 재미를 느끼거나, 마음이 정리되었거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진솔들이 나타났다.

지금 [배우자] 만나서 여행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1년에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한 세 번 이상은 꼭 해외를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는데, 매년 결혼하고 나서부터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 왜 진작에 이런 걸 안 다니고 그랬을까?

후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안 보냈어도 그거와 비슷한 시간을 어쨌든 살았을 것 같거든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 일에 되게 성공을 했어도 내가 금전적으로라도 집에 헌신을 해야 된단든지 그러니까 어떤 모양과 형태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쨌든 내가 뭔가 어쨌든 희생해야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되게 길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의 상황이 극복되고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돌본 가족]이 만약에 완치를 해서 나오실 경우에 그 이후의 생활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머니가 나오시면 많이 좋아지신 상태이시겠지만 그래도 제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게 있으니 계속 도와드릴 수도 없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라는 거 사실 [돌본 가족]께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쁜 마음일 수 있을 수 있지만 ...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그래도 [돌본 가족]이 저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들이 올 거라고 그러니

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마가 더 안 좋아지실 것도 알고 ...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현실 상황에 더 맞추는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인터뷰 참여자들은 젊은 시기임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의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는 언급이 많았다. 기존에 경험했던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투영하는 측면도 있어 보였고, 성장과정에서 돌봄의 상황들이 자신을 지배했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제가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제가 저 병원에 가서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길게 보지 않아요. 생각을 일절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제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전 '당장 하고 싶은 게 그거다'인데 굳이 막 미래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아직) 제가 의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없었고요 빨리 어른이 돼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6. 분석내용 정리

이상과 같이 영케어러 사례를 모집하여 총 12명의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하고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참고하여 인터뷰 내용을 크게 돌봄상황의 배경과 맥락, 돌봄상황의 특성과 욕구, 돌봄상황 대응을 위한 조건, 돌봄상황 대응의 노력, 돌봄상황의 결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영케어러들은 돌봄상황 이전에 이미 돌봄책임을 안게 되는 배경으로서 가족관계와 환경, 성장과정, 경제적 상황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돌봄책임을 떠맡게 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긍정적 기억들에 의한 동력도 있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적 의무감을 가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완전한 보호의 대상이거나 완전한 자립의 대상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의 청년이라는 시기는 돌봄과정에서 배제를 당할 수 있고 착취에까지도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앞서 모집 사례의 다양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돌봄상황의 특성과 욕구의 측면에서 돌봄 부담은 집중적이고 상시적인 과중한 부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돌봄부담이 적은 경

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신질환의 돌봄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상황발생으로 돌봄부담과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각종 사건사고도 수시로 벌어져서 상당한 불안과 가중되는 책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병원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함께 학업과 진로에 지장을 받거나 진로선택의 제한을 받거나 하면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약을 받고,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건강상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가 대부분 발견되었으며 극단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무책임한 사회시스템은 문제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고, 정보의 부족이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하여 공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충분치 못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돌봄상황을 대응하는데 있어 가족관계, 주변관계, 근로환경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관계는 조언, 정보, 경제적 지원, 돌봄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일정 선을 넘기 어려운 한계 역시 가지고 있었다. 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입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받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갈취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친구나 또래 관계 역시 한편으로는 돌봄상황의 어려움을 잊게 해주기도 하고, 지지나 활력을 주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은 받기 어렵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한편, 이성관계나 배우자는 친구에 비해 더 깊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 이들이 위로가 되고 새로운 삶의 힘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재상황을 채워줄 수 있는 가족내외의 어른의 존재나 거의 완전한 공감과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자조모임 등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청년들은 생계, 주거, 의료비, 교육, 치료, 학습 등 다양한 공적 자원을 활용하며 돌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제도개혁으로 인해 혜택을 유지하고, 사회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했던 경우들도 있었다. 공적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관계의 회복에 결정적 도움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고, 민간보험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지만 정보가 잘못되거나 계약상 제약이 많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 겪는 모습도 나타났다.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자원 활용을 위해 본인이 백방으로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상담 및 치료를 찾고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비전문적인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공적 상담서비스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어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진로준비와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돌봄부담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굴레에 묶여있기도 하였다.

돌봄상황의 결과에는 양면적 측면이 존재하였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돌봄과정은 새로운 결속과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과중한 돌봄부담은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돌봄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더 강인해지고 성숙해지는 성장을 경험한 영케어러들도 있었지만, 부모역할의 부재와 돌봄으로 인한 고립 등으

로 사회성의 미숙을 토로한 영케어러들도 있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영케어러들 대부분은 돌봄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넘기고 생활의 안정과 회복을 찾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돌봄책임으로 상황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기도 했고, 희망하는 진로와 현실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IV-3>과 같다. 우리나라 영케어러의 상황과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케어러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영케어러들의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급여와 민간프로그램 등의 지원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3> 영케어러 심층 인터뷰 분석 요약

| 구분 | 범주 | 하위 요소 |
|--|---------------|--|
| 돌봄 상황의 배경과 맥락 | 돌봄상황 이전의 취약성 | 사별, 이혼 등으로 단절되거나 갈등의 부모관계 |
| | | 화목한 기억이 별로 없는 소원한 가족관계 |
| | | 가족과 사회관계로부터 고립된 가족 |
| | | 부모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성장과정에서의 부모역할 부재 |
| | | 경제적 어려움이나 수입의 불안정 |
| | 가족으로서의 추억과 의무 | 돌봄 부모와의 좋았던 추억과 돌봄의 보은 의미를 가지는 남성 영케어러 |
| | | 가족에 대한 좋은 추억 등 조건없는 의무감을 표현하는 여성 영케어러 |
| | | 형제 중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돌봄책임 |
| | 청년 시기의 취약성 | 돌봄이나 치료, 생활에 대한 정보나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
| 완전한 보호나 완전한 자립도 아니면서 착취까지 노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청년시기 | | |
| 돌봄 상황의 특성과 욕구 | 돌봄의 부담 | 입원이나 재택간병 상황에서 집중적인 간병이나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과중한 돌봄 부담 |
| | | 간병인을 사용하여도 별도 비용 요구 등 횡포로 적지않은 부담과 스트레스 |
| | | 상황에 따라 계속 병원을 옮기거나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해 상시적 상황발생으로 인한 돌봄부담 |
| | |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자살시도 등 자해, 자살, 폭행, 범죄연루 등 사건사고 경험 |
| | | 스스로 정신질환 관리가 되거나 비동거 가족의 돌봄, 비장애 형제 돌봄 등 상대적으로 돌봄부담이 적은 경우 |
| | |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해지거나 식사를 거를 정도의 빈곤 경 |
| | 경제적 문제 | 부모의 부재 상황으로 인한 학창시절 방황, 학업 중단, 학업 부진 등의 경험 |
| | | 돌봄상황으로 인해 진로준비 비용이 부담되거나, 진로준비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진로선택이 제한 |
| | | 돌봄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사정 |

| | | |
|--|--|---|
| | 정신건강 상의 문제 |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하거나 공유해서 상처를 받는 등 이성, 직장 등 관계에의 부정적 영향 |
| | | 우울감에서부터 자살생각과 시도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 |
| | |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알콜중독의 위험성 |
| | 사회적 지원의 문제 | 청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사회시스템 |
| | | 공적 복지시스템에 들어와 있어도, 공공기관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복지정보 |
| | | 소득, 자산, 서류상 가족 등 까다로운 기계적 조건으로 인해서 공적 지원으로부터 배제 |
| 공직 지원을 받아도 충분치 못하거나 상황 변화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중단되는 한계 | | |
| 돌봄 상황 대응을 위한 조건 | 가족 관계의 역할 | 도움이 되는 공적지원도 재심사 등으로 인한 탈락 위험으로 여전한 불안감 |
| | | 상의 상대, 정보제공, 경제적 도움, 직접 돌봄 제공 등 도움을 주는 친척관계 |
| | | 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왕래가 없어 도움을 못받는 등 친척관계의 한계 |
| | 주변 관계의 영향 | 오히려 배제를 당해 상처를 입히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갈취나 착취까지 일어나는 가족관계의 악용 |
| | | 어려운 상황을 잇을 수 있게 해주거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지지나 활력, 문제해결까지 도움이 되는 친구나 또래 관계 상황을 공유하는데 선이 있거나 실질적이 도움이 크게 되지는 못하는 친구관계의 한계 |
| | | 친구보다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를 받는 이성관계 돌봄부담을 함께 나누거나 살아가는데 새로운 힘이 되는 배우자 |
| 돌봄을 위한 직업의 조건 | 부모의 부재 상황을 채워주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어른의 존재 거의 완전한 공감이가능하고 힘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도 되는 자조모임 | |
| | 돌봄의 책임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에서의 배려 | |
| 돌봄 상황 대응의 노력 | 공사자원의 활용 | 유연한 시간활용이 가능한 개인사업이나 자영업 |
| | | 생계, 주거, 의료비, 교육, 치료, 학습지원, 가사지원 등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급여제도나 복지기관의 활용 |
| | | 기준이 완화되는 제도개혁의 덕분에 청년의 소득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공적 급여혜택 |
| | | 병원치료, 신체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었던 치료나 지원 |
| | | 공적지원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생활안정과 관계회복 |
| |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계약상 제한이 되거나 사후 정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민간보험 | |
|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기관을 백방으로 알아보는 본인의 노력 | | |
| 상담 및 치료 | 연구 인터뷰조차 도움 될 정도로 필요를 느끼고 상담에 대한 | |

| | | |
|-------------------------------------|--------------------------------|--|
| | | 욕구 |
| | | 적극적인 상담서비스 탐색과 활용 |
| | |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담서비스 |
| | | 극단적인 위험을 방지해주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정신과 치료 |
| | | 비전문적일 때 오히려 피해를 받는 상담서비스 |
| | | 서비스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적 상담서비스 |
| | 경제 활동과 진로준비 |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시간제 근로 |
| | | 돌봄과 관련된 진로를 준비하거나 중단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 노력 |
| | | 돌봄상황으로 갈등상황에서 지원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희망진로 |
| | 자기 관리와 의지 | 자신을 지켜내고 버틸 수 있게 하는 자기 의지, 오기, 책임감 스스로 관리하는 본인의 장애나 질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여가활동 |
| | | 상황 회피 |
| | 돌봄 상황의 결과 | 가족 관계의 변화 |
| 돌봄부담과 거리를 두고 싶은 독립의 욕구와 실행하기 어려운 굴레 | | |
| 성장과 지체 | | 돌봄의 과정을 통한 가족관계의 회복과 결속 |
| | | 과도한 돌봄부담으로 인한 돌봄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 혼란, 거리두기로 자기상태 호전 |
| 회복과 불안 | | 돌봄경험을 통해 더욱 강인해지고 더 성숙해진 성장의 경험 |
| | | 부모역할의 부재, 돌봄부담으로 인한 고립 등으로 인한 사회성의 미숙 |
| | | 돌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찾은 생활의 안정과 회복 |
| | | 여전히 남아있는 돌봄책임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
| | 내가 희망하는 진로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의 갈등 | |
| |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모습 | |

VI 정책대응방안

1. 해외사례

영케어러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의 양상과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Choudhury & Williams, 2020). 현재 국가별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지 수준과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표 VI-1〉 참조),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영케어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Leu & Becker, 2017; Leu et al., 2021).

다수의 국가는 중앙 및 지방정부, 의료 및 복지기관, 학교,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는 민관협력의 방식을 통해 영케어러 지원제도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영국은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내 영케어러의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호주는 영케어러 지원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플랫폼(Young Carers Network)을 운영하였다. 또한 비영리단체(NGOs)는 현재 국가를 망라하고 영케어러 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영케어러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국가 전역으로는 협력단체를 조직해 영케어러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와 정책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Leu & Becker, 2017).

아직 각국의 영케어러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부족하나, 영케어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서적 안정, 교육, 정보, 기술(skill) 개발 등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Pehpls, 2017; Phelps, 2021). 스코틀랜드 UWS(University of the West of Scotland)와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Oxfam)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영케어러 보조금 제도인 Young Carer Grant는 실제로 영케어러가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영케어러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Maclean & Hay, 2021). 호주의 Young Carer Bursary Program의 경우 2017년 발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비보조금이 영케어러의 학업 성취도 개선, 재정적 부담 경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김령희, 2021, p.6). 이외에도 잉글랜드의 영케어러 정책을 평가한 Phelps(2017)는 영케어러 지원 프로그램이 영케어러에 대한 지역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과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영케어러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경우 자신감을 갖게 되어 미래 직업을 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Phelps, 2017, p.117).

〈표 VI-1〉 영케어러 지원 프로그램 해외사례

| 영국 | | | |
|---------------------------------|-------|---------|---|
| 프로그램 | 지역 | 내용 | |
| Carer's Allowance (CA) | 영국 전역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정부에서 무급 돌봄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제도 ○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적어도 35시간 이상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중 만 16세 이상 - 최근 3년 중 2년 중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거주한 자 - 돌봄대상자가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를 받는 경우 - 제외 대상: 풀타임 교육, 주당 21시간 이상 공부하는 자, 세후 주에 £132 보다 많은 수입이 있는 자 - 돌봄제공자가 돌봄대상자와 같이 거주해야 하거나 친인척일 필요 없음. - 한 명 이상에게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 지원 없음. - 현황: 2020년 11월 기준 영국의 18세 미만 청년 3,783명이 수령함. |
| | | 서비스/급여 | ○ 주당 £69.60 |
| | | 재정/전달체계 | ○ 영국 정부(노동연금부) |
| Carer's Allowance Supplement | 스코틀랜드 | 개요 | ○ CA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지급됨. |
| | | 서비스/급여 | ○ 연 2회 £245.70씩 지급됨. |
| | | 재정/전달체계 | ○ 스코틀랜드 정부(Social Security Scotland) |
| SeIvere Disability Premium(SDP) | 영국 전역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지원, 소득기반구직자수당, 소득 관련고용지원수당, 주택수당에 포함 되어 있는 추가적인 지원 금액임. ○ 본래 SDP는 혼자 살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른 비의존자(non-dependents)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지만, 18세 미만의 청년이나 18-19세 중 아동수당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은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음. |
| | | 서비스/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주당 £69.40 ○ 둘 다 수급자격이 있는 커플의 경우 주당 £138.80 |
| | | 재정/전달체계 | ○ 영국 정부 |
| Young Carer Grant | 스코틀랜드 | 개요 | ○ 복지급여를 수령한 돌봄대상자를 직전 3개월 동안 주당 16시간 이상 돌 |

| | | | |
|------------------------------------|--------------|---------|---|
| | | | 본 스코틀랜드 거주 16-18세의 케어러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
| | | 서비스/급여 | ○ 연 £326.65의 보조금 |
| | | 재정/전달체계 | ○ 스코틀랜드 정부(Social Security Scotland) |
| Young Carers FestiVal(YCF) | 영국 전역 | 개요 | ○ 11-16세 영케어러 대상 ○ 2000년 이후 매년 여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케어러 축제 |
| | | 서비스/급여 | ○ 라이브 음악, 야외 영화, 불꽃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 |
| | | 재정/전달체계 | ○ The Children's Society와 YMCA Fairthone Group가 함께 운영함. |
| Young Carers Action Day | 영국 전역 | 개요 | ○ 행사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보도됨.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YoungCarersActionDay가 트위터 상에서 유행하였음. |
| | | 서비스/급여 | ○ 영케어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기여를 알리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
| | | 재정/전달체계 | ○ Carers Trust |
| Scottish Young Carers FestiVal | 스코틀랜드 | 개요 | ○ 스코틀랜드의 연례 행사 ○ 주된 목적: 영케어러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 |
| | | 서비스/급여 | ○ 다른 영케어러와의 만남과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가 제공됨. ○ 가장 최근의 2021년 행사에서는 40개 이상의 워크샵이 운영되었음. |
| | | 재정/전달체계 | ○ Carers Trust Scotland |
| Hull Young Carers Wellbeing Grants | 잉글랜드의 킹스톤어폰힐 | 개요 | ○ 킹스톤어폰힐에 거주하는 5-17세 영케어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 | | 서비스/급여 | ○ £300의 보조금 ○ IVirtual Waller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됨. ○ 지역 및 국가 기관에서 바우처, 상품, 활동을 구매할 수 있음. |
| | | 재정/전달체계 | ○ KIDS, NHS, 킹스톤어폰힐 시의회 |
| Fareham and Gosport Young Carers | 잉글랜드의 킹스톤어폰힐 | 개요 | ○ 8-18세 케어러를 위한 유료 서비스 |
| | | 서비스/급여 | ○ 정기적인 클럽 운영(세션 당 £3) ○ 학교와 협력하여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 제고 ○ 상담 기관 등과의 연결 지원 |
| | | 재정/전달체계 | ○ KIDS |
| Young Carers | 잉글랜드 | 개요 | ○ 루턴에 거주하는 5-25세 케어러 대 |

| | | | |
|---------------------|------------------------|---------|--|
| SerIvice | 베드퍼드셔 주의 루턴 | | 상 |
| | | 서비스/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방문 지원 ○ 드롭인(Drop-ins) 서비스 지원 ○ 여행 및 활동 추진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업장 방문 지원 |
| | | 재정/전달체계 | ○ CHUMS 자선단체 |
| 아일랜드 | | | |
| 프로그램 | 지역 | 내용 | |
| Young Carer Project | 아일랜드 | 개요 | ○ 영케어러가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 |
| | | 서비스/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6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세분됨. - 영케어러 개인/가족에 대한 지원 - Young Carer Groups 네트워크 운영 - 국가 행사 - 무료 영케어러 카드 - 교육 관련 지원 - 온라인 프로그램 |
| | | 재정/전달체계 | ○ Family Carers Ireland(FCI, 공식적으로는 The Carers Association) |
| 캐나다 | | | |
| 프로그램 | 지역 | 내용 | |
| Powerhouse Project | 온타리오 주의 나이아가라, 할디만드-노퍽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 나이아가라(Niagara)와 할디만드-노퍽(Haldimand-Norfolk) 지역에 거주하는 5-25세의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함. ○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생긴 영케어러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님. ○ 영케어러에게 사회적·교육적·개인적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다른 영케어러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고, 영케어러 가족의 통합과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둠. ○ 영케어러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holistic) 접근방식을 취함. |
| | | 서비스/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적인 기술(예: 요리), 공예, 비디오 게임, 컴퓨터 스킬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워크샵 ○ 가정방문 ○ 상담(그룹, 개인) ○ 여름캠프 ○ 주간 휴식(weekly respite) 등 |

| | | | |
|--|----------------|---------|--|
| | | 재정/전달체계 | ○ 비영리단체인 The Young Carers Initiative(YCI)에 의해 운영됨. |
| Young Carers Program(YCP) | 토론토 대도시권 (GTA) | 개요 | ○ 토론토 전역의 영케어러(5-18세)와 그 가족을 무료로 지원함. |
| | | 서비스/급여 | ○ 영케어러 개인에 대한 지원 - 워크샵: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스포츠, 요리, 마음 돌봄, 셀프케어, 교육, 리더십, 숙제 도움, 의료 교육 등)을 가르침. - S.I.B.S(Spectacular, Incredible, Brave Siblings) 프로그램 - YCP Night와 사회적 이벤트(체육 활동, 홀리데이 파티, 콘서트 등) 개최 - YCP 캠프 - Youth Champions Committee ○ 영케어러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지(Advocacy): 다른 사회 서비스기관이나 학교와의 협력이 폭넓게 포함 - 소개/위탁(Referral): Hospice Toronto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1대 1 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원함. - 필요한 정보와 자원 제공 |
| | | 재정/전달체계 | ○ Hospice Toronto의 주관 하에 15개 이상의 지역사회 조직과 기관들의 협력으로 운영됨. |
| Cowichan Young Carers Program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개요 |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 섬에 거주하는 13세에서 25세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함. ○ 주된 목표 -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 영케어러 지원 네트워크 구축 |
| | | 서비스/급여 | ○ (개별/가족) 상담 ○ 워크샵 ○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안내 및 추천 등의 서비스 |
| | | 재정/전달체계 | ○ Cowichan Family Caregivers Support Society(CFCSS) |
| Comox Valley Youth as Caregivers Program | 밴쿠버 섬의 코목스 밸리 | 개요 | ○ 밴쿠버 섬의 코목스 밸리 지역 거주자 중 만 12세부터 25세의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함. ○ 2012년부터 시작됨. ○ 정부, 교육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의해 제공되지 않아 기밀성 보장에 유리함. |
| | | 서비스/급여 | ○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 제고, 영케어러에게 다가가기, 영케어러가 모일 |

| | | | 수 있는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환경 제공 등을 목표로 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
| | | 재정/전달체계 | ○ Community Justice Centre(CJC)의 주관 하에 CJC가 승인한 25세 이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함. |
| 호주 | | | |
| 프로그램 | 지역 | 내용 | |
| Carer allowances | 호주 전역 | 개요 | ○ 장애나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고령인 돌봄대상자를 집에서 돌보는 케어러(전체 연령)에 2주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 ○ 자격 - 돌봄대상자가 16세 이상이며 심각한 수준(ADAT 기준)의 장애나 질병, 혹은 고령일 경우 - 돌봄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일 경우 케어러가 'Carer Payment'를 받지 않아야 함. - 소득조사(income test)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연 소득 합계 \$250,000 이하 (adjusted taxable income) |
| | | 서비스/급여 | ○ 돌봄대상자 16세 이상 - 2주에(fortnight) \$136.50 ○ 돌봄대상자 16세 미만 (돌봄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 high needs: 2주에 \$136.50 + Health Care Card - low needs: Health Care Card |
| | | 재정/전달체계 | ○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득지원제도로, SerIVices Australia ¹⁰)에서 운영함. |
| Carer payment | 호주 전역 | 개요 | ○ 케어러(전체 연령)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소득지원제도 ○ 무급 돌봄 노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차질을 겪는 케어러에 지급되는 소득 대체 연금제도 ○ 자격 - 자산과 연금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성인 혹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임금노동/학업 및 직업훈련 시간 주당 25시간 이하인 경우 |
| | | 서비스/급여 | ○ 수급액은 다른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비율이 적용됨. ○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 1인인지 부부 2인인지 등에 따라 다른 비율로 계산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득지원제도로, SerVices Australia에서 운영함. |
| Young Carer Bursary Program ¹¹⁾ | 호주 전역 | 재정/전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5세 영케어러의 학비보조프로그램으로 공인된 교육 및 훈련기관의 과정 대해 지원 자격이 인정됨. |
| | | 서비스/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연 \$3,000 - 연초 \$2,000 지급 - 6월 \$1,000 추가 지급 |
| | | 재정/전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정으로 비정부기구 Carers Australia에 의해 운영됨. ○ 온라인 플랫폼, Young Carers Network¹²⁾에서 지원 가능함. |
| Carer Gateway ¹³⁾ | 호주 전역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 돌봄을 수행하는 케어리(전체연령)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 |
| | | 서비스/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피어서포트(peer-support), 온라인 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무상으로 제공함. |
| | | 재정/전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각 주 지역의 비영리단체가 프로그램을 관리 및 운영함. ○ 전화, 온라인, 대면의 방식으로 제공됨. |
| Young Carer Program at Carers NSW | 뉴 사우스 웨일스 주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South Wales 주 25세 이하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 |
| | | 서비스/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및 의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해 줌. ○ 뉴스레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알리고, 가능한 서비스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림. ○ 정서적 지원: 영케어러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영케어러 사회인식 개선 워크샵: 학교, 대학, 조직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움. |
| | | 재정/전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South Wales 주 케어러 비영리단체인 Carers NSW¹⁴⁾에서 운영함. |

2. 국내 사례

- 10) 참고사이트: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arer-allowance>
- 11) 참고사이트: <https://youngcarersnetwork.com.au/bursary/young-carer-bursary/>
- 12) 참고사이트: <https://youngcarersnetwork.com.au/>
- 13) 참고사이트: <https://www.caregateway.gov.au/>
- 14) 참고사이트: <https://www.carersnsw.org.au/serVices-and-support/programs-serVices/young-carers/young-carer-program-at-carers-nsw>

영케어러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상의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영케어러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지 못하여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1년 일명 ‘강도영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영케어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공적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하였다.

그 시작으로 2021년 10월 국회에서는 영케어러 관련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영케어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¹⁵⁾. 본 법안에서는 영케어러(Young Carer)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하고,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¹⁶⁾.

이후 2022년 2월 보건복지부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수립 방안(이하 지원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의 사업과제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2.2.14.). 지원 수립 방안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연계하여 영케어러의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인식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4월 초에는 중·고등생 및 만 13세~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발굴·조사’ 정책의 일환으로서 처음 시행하였다¹⁷⁾. 영케어러의 실질적 보호와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영케어러의 정확한 파악과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22.4.1.). 본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돌봄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들이 기존 제도들과 연계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영케어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존 복지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¹⁸⁾, 최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영케어러의 상황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에서 노동자로의 이행기에 놓인 영케어러의 경우 제도의 한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조건으로 인하여 영케어러가 양질의 노동환경에 진입하는 어려움이 있

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8월 24일 최종 접속,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05).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2022년 8월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임.

16) 뉴스1, 김동규. 2021.10.28. “김성주 의원 ‘영케어러 지원방안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https://www.news1.kr/articles/?4475770>

17) 19세 미만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교 현황 조사로,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한 현황 조사로, 19세 이상 34세 미만 대학생은 대학 설문 조사로, 19세 이상 34세 미만 일하는 청년은 청년센터 등을 통한 설문조사로 구분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음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영케어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부모의 사망·이혼·가출 혹은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영케어러의 대표적인 기존 복지제도로 여겨진다. 아직 영케어러 관련 정부 공식 통계가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케어러의 규모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로 추정되고 있다(명대신문, 이예은, 2022.03.28., “학업, 생계에 가족 간병까지 책임지는 ‘영케어러’<1099호>”

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영케어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경우 수급권이 박탈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돌봄 및 생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혜택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수급권을 유지하자니 지원급여만으로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는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혹은 수입이 잡히지 않는 불법 아르바이트 등 저질의 일자리에만 머무르게 돼 평생 가난을 탈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영케어러로 하여금 가정 내부의 취약한 상황적 조건을 극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¹⁹⁾.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영케어러 문제를 일찍이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온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단체가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 서대문구는 지역 영케어러 문제에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이다. 서대문구는 영케어러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영케어러 35세대를 발굴하였으며, 급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²⁰⁾. 2022년 1월부터는 만 14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영케어러 사업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영케어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시범사업지역으로 단독 선정되어 2022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케어러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3.3.). 먼저 행정·법률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 변호사 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복지사업들을 확대하여 가족돌봄청(소)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북삼성, 동신, 서울적십자, 세란, 세브란스 등 5개 병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던 ‘퇴원 환자 연계 사업(병원-복지 서비스 윈스톱 돌봄지원 체계)’을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확대하여 영케어러의 간병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영케어러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통합 서비스 상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서대문구 보도자료, 2021.12.14.).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영케어러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돌봄SOS 센터, 마을돌봄키트, 가족돌봄청년 위기지원, 다정한 관계지원 사업, 가족돌봄청(소)년 조례 제정 등 다양한 구 특화사업을 도입하여 영케어러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19) 조선비즈. 최효정, 정현진. 2022.05.04. “알바하면 생계급여 깎여...그룹홈 청년 자립 발목 잡는 기초생활수급제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04/MXPG4ORIV45ANFFPPRGDRITYGZ5E/?outputType=amp

20) KBS NEWS. 최유경. 2022.02.17. ““아픈 가족 혼자 떠안지 않게”...서대문구, ‘영 케어러’ 발굴·지원”. <https://news.kbs.co.kr/news/IView.do?ncd=5397355>

학습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²¹⁾. 추가적 지원 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VI-2〉 영케어러 지원 사업 국내사례

| 단체 | 내용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영케어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2021.10) ○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수립 방안’ 발표(2022.2) ○ 영케어러 전국 실태조사 실시(2022.4) |
| 서울시 서대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가족돌봄청(소)년 발굴조사 실시(2021.12)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지원 시범사업지역 선정(2022.3) ○ 돌봄 SOS 센터, 마음돌봄키트 등 가족돌봄청(소)년 서대문구 특화사업 시행(2022.1~) |
| 부산시 중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최초로 영케어러 조례 제정(2021.9) |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 시행(2021.11~) ○ 생활위기지원금 및 자기계발지원금 지급 |
| 희망친구 기아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케어러 청년 꿈 지원사업’ 시행(2021.12) ○ 자기계발지원금 및 심리정서지원금 지급 |
| 서서울 생명의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ng Carer 바로서기’ 사업 시행(2022~) ○ 심리상담, 가사 및 돌봄, 문화 활동 등 지원 |

2. 향후 대응방안

영케어러에 대한 국내 지원은 거의 전무했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원방안이 민간과 공공에서 마련되고 있다. 영케어러는 관계 형성 및 학업과 진로탐색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 동안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서 높은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사회적 위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위험을 넘어서 미래의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이다. 즉, 학업에 차질을 경험하게 될 경우 현재 돌봄 부담을 넘어 생애소득의 영구적 감소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사하게 진로에 대한 탐색이 더디게 될 경우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숙련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영구적 소득감소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종종 빈곤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관계에 대한 위험 역시 학업이나 고용만큼 위험을 높이게 된다. 청년의 시기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나아가 배우자나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돌봄의 부담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높이게 되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 서대문구 영케어러 사업 담당주무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임.

결과적으로 현재와 미래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더 양질의 인적자본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미래 모두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케어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투자는 현재를 넘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차원 모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추후 어떠한 영케어러에 대한 돌봄-학업-노동-관계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소득지원-돌봄지원-의료지원 등과 같은 필수적 지원은 공공에서 담당을 하고, 민간에서 학업이나 상담이나 동료집단 운영과 같은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돌봄부담과 비용에 대한 지원

영케어러가 직접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은 돌봄이다. 돌봄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know-how)가 부족할 뿐 아니라 돌봄의 부담은 다른 활동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학습이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돌봄부담 경감이 없을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원은 돌봄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돌봄체계 내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돌봄필요 수준이 상당한 수준을 넘어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거나 65세 미만의 인구들 중 장애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는 파악되는 것은 영케어러들이 돌보는 이들은 연령대나 돌봄유형 등에 있어서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적인 도움을 찾아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본 연구는 이의 대안으로 영케어러가 판별이 되게 될 경우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을 확장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사간병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²²⁾. 구체적으로는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22)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IView2.do?p_sn=10 (2022년 10월 10일 접속)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영케어러의 돌봄이 필수적인 대상을 포함하여 제도를 개편하거나 위의 6항에 영케어러를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영케어러들의 돌봄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단가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다. 현재 24시간 형과 27시간 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본인부담액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영케어러가 우선 이 대상 내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동시에 1) 기준중위소득 70% 기준이 영케어러에게는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 있고, 2) 서비스 제공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영케어러 가족이 주거 등과 관련된 자산이 있을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들이 갑자기 자산을 처분하여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간이 한 달에 24-27시간이라는 것은 한 주에 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학업과 고용에 집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및 단가

|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 24시간 (A형) | 차상위계층 (나형) | 월 228,000원 (9,500원) | = | 월 210,480원 (8,770원) | 월 17,520원 (73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 월 28,000원 (9,500원) | | 월 228,000원 (9,500원) | 면제 |
| 27시간 (B형) | 차상위계층 (나형) | 월 256,500원 (9,500원) | + | 월 236,790원 (8,770원) | 월 19,710원 (73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 월 256,500원 (9,500원) | | 월 247,050원 (9,150원) | 월 9,450원 (350원) |

자료: 각주73 참조

이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들이 추가로 영케어러의 돌봄을 지원하면서 여유와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청년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2022)는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의 공제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의욕을 장려시킴과 동시에 장애청년의 경우 탈시설하여 독립가구를 형성한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부모와 별도의 독립된 가구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대책에도 영케어러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영케어러의 경우 부모가 의료혜택을 필요로 하거나 생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경

우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쉽게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과 장애인청년에 더하여 영케어러 청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조항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부모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주된 돌봄자 역할을 할 경우 청년의 소득은 상당부분 공제를 받게 하여 노동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며, 동시에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50만 원을 우선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에 대해 공제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영케어러의 경우 의료에 대한 급여 여부가 상당히 근로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의 폭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더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영케어러 종합지원 센터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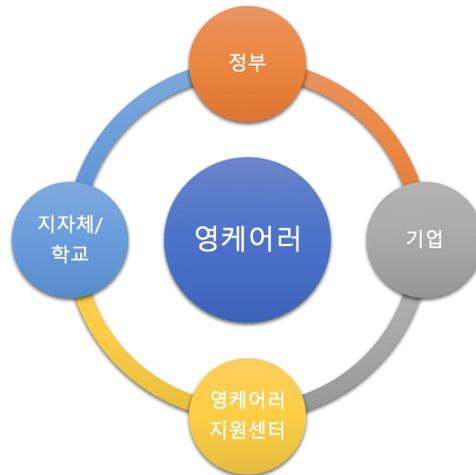
영케어러들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점차 사회로부터도 고립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영케어러들이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으로 약 3-5% 가량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케어러임을 알리지 않거나 이미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들은 정책 및 돌봄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케어러 종합지원 센터는 영케어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를 연결시켜주고, 고립을 예방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의 Young Carers Initiative나 호주의 Carers Australia와 같은 비영리기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장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료적 접근에 비해서 영케어러들의 심리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유연하고 소프트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 비영리기관에 의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시에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정보와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 및 학습/고용/진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 및 ESG 활동의 일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센터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비영리는 사업의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운영을 한다. 직접 상담이나 심리지원 및 사회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한 공공 및 기업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 영케어러를 발굴하기도 하고,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 센터를 통해서 1) 학업과 진로에 대한 지원, 2) 상담과 같은 심리지원, 3) 자조모임과 같은 동료집단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영케어러들이 출석하는 학교도 일정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케어러들의 특수한 돌봄상황이 학교에서 즉각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동시에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조기현, 2022).

〈그림 VI-1〉 영케어러 종합지원 체계



학업과 진로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재학생의 경우 돌봄 때문에 학습시간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앞서 제시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하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돌봄으로 인해서 제대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진로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기회나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현금과 현물 양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진로와 맞는 배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질적연구 사례를 보면 학습이나 간병 등 상당한 재정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사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역할은 이러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인턴이나 견습(apprenticeship)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숙련 감소를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영케어러의 부담이 아직 끝나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돌봄부담과 함께 학습이나 훈련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나 유연하고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한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상담서비스와 심리지원이다.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들이나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새로운 문제적 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문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조언, 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지식은 초기에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자존감 상실이나 고립, 외로움, 우울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조집단과 같이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만나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격려하는 모임은 이들의 자존감 및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돌봄이 지원된다면 영국의 Young Carer Festival과 같은 1박2일 혹은 2박3일의 휴양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자신의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심리적 지원을 넘어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나 불꽃놀이 같은 페스티벌을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삶의 연결망을 제공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니트생활자²³⁾와 같은 니트족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을 통한 서로의 안부 확인이나 생활 나눔 등은 고립되지 않고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https://neetpeople.kr/> (2022년 10월 10일 접속)

VII. 결론

본 연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숨겨진 돌봄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영케어러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영케어러에 대한 정의는 국가와 정책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다른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이 이슈는 돌봄서비스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약한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으며, 상대적으로 대륙유럽의 문헌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슈가 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체로 영케어러는 우리와 달리 청년보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을 하는 자유주의 전통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부담에 대해서는 민관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청년의 경우 아직 가족과의 연결이 지속되는 반면 외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영케어러를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지만, 실제 분석과 논의에서는 더 문제적 계층으로 판단되는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케어러를 추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위험을 양적으로 측정하였다. 자료에서 청년이 건강 상태가 5점 척도 중 가장 좋지 않은 1점인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에 영케어러로 추정하였다. 영케어러는 대략 전체 가구의 약 5%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은 기존 연구에 따른 예상대로 빈곤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박탈지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소득에 문제가 발생하고, 동시에 돌봄을 제공하게 되면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더욱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다양한 삶의 만족도나 우울, 자살생각에 있어서 영케어러가 아닌 이들에 비해서 더욱 문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학업이나 고용의 문제 뿐 아니라 박탈의 경험과 정신건강의 문제 등이 더하여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집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에서는 이들의 취약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표면적인 사회적 위험을 넘어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공적이고 사적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구체적 상황들이 발견되었다. 공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오히려 공적인 접촉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가족이나 친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케어러가 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지와 거리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이들로부터 ‘착취’에 가까운 경험을 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의 위험을 넘어서 이들의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암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욱 즉각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케어러에 대한

개입은 본 이슈가 사회적 위험으로 각인된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더욱 발견된다. 이 국가들은 국가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며 영케어러를 지지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즉각적인 돌봄 제도의 확장과 청년의 독립적 삶을 위한 제도 확충이 시행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공 제도의 급속한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사간병지원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영케어러가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영케어러가 일을 함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케어러의 심리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심리 및 학업/진로/고용 서비스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센터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케어러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참고문헌

- 김령희. (2021). 영 케어러 지원: 영국, 호주의 사례. 국회도서관 통권 제15호: 1-7.
- 김윤영. (2018). 1인가구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3): 1-30.
- 관계부처 합동. (2022).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 나티엘, 수잔 L. (2020). 세상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조현병 환자의 아들들이 들려주는 열두 가지 이야기. 이상훈 옮김. 아마존의 나미.
- 마이니치신문 취재반. 남궁가운 옮김. (2018). 간병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 시그마북스.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1. 27.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2. 14. “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3. 3. “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4. 1.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서대문구 보도참고자료. 2021.12.14., “서대문구, 영 케어러(Young Carer) 선제 발굴, 지원한다”
- 손창균. (2008).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조정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145: 6-23.
- 야마무라 모토키. 이소담 옮김. (2015).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고령화와 비혼화가 만난 사회. 코난북스.
- 오미애, 이해정, 신재동, 이계오, 박승환, 손창균.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용아, 이혜리. (2019).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루아크.
- 조기현. (2019). 아빠의 아빠가 됐다. 이매진.
- 조기현. (2022). 새파란 돌봄. 이매진.
- 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242.
- Aldridge, J., & Becker, S. (1993). Children Who Care: Inside the World of Young Carers. Loughborough: Loughborough University.

- Aldridge, J. (2018). Where are we now?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n young carers. *Critical Social Policy*, 38(1), 155-165.
- Statistics, A.B.O.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Reflecting Australia – Stories from the Census, 201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ustralia, 2017.
- Becker, S. (2007). Global perspectives on children's unpaid caregiving in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young carers' in the UK, Australia, the USA and sub-Saharan Africa. *Global social policy*, 7(1), 23-50.
- Becker, F., & Becker, S. (2008). *Young Adult Carers in the UK: Experiences, Needs and Services for Carers Aged 16-24*, London: The Princess Royal Trust for Carers.
- Becker, S., & Sempik, J. (2019). Young Adult Carers: The Impact of Caring on Health and Education. *Children & society*, 33(4), 377-386.
- Cass, B., Brennan, D., Thomson, C., Hill, T., Purcal, C., Hamilton, M., & Adamson, E. (2011). Young carers: social policy impacts of the caring responsibilities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 Cass, B., Smyth, C., Hill, T., Blaxland, M., & Hamilton, M. (2010). Young carers in Australia: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ir caregiving. *FaHCSIA Social Policy Research Paper*, 38.
- Charles, G., Stainton, T., & Marshall, S. (2012). Young carers in immigrant families: An ignored population. *Canadian Social Work*(12), 83-92.
- Choudhury, D., & Williams, H. (2020).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inclusion of young carers with additional needs: An eco-systemic understanding.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36(3), 241-256.
- Dearden, C. & Becker, S. (2000). *Growing Up Caring: Vulnerabili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 Young Carers' Experience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Elango, S., García, J. L., Heckman, J. J., & Hojman, A. (2015). Early childhood education. *Economics of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2, 235-297.
- Foley, N., Powell, A., Clark, H., Brione, P., Kennedy, S., Powell, T., Roberts, N., Harker, R., Francis-DeVine, B., & Foster, D. (2022). *Informal Carers*. House of Commons Library.
- Foley, N., Powell, A., Francis-DeVine, B., Foster, D., Ferguson, D., Danechi, S., Kennedy, S., Powell, T., Roberts, N., Harker, R., & McInnes, R. (2021). *Informal Carers*. House of Commons Library.
- Green, R., Collingwood, A., & Ross, A. (2010). Characteristics of bullying victims

- in schools.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 Hamilton, M., & Redmond, G. (2019). Are Young Carers Less Engaged in School than Non-Carers? Evidence from a Representative Australian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13(1), 33-49.
- Hanson, E., Magnusson, L., Becker, S., Leu, A., Boer, A., Boccaletti, L., Hlebec, IV., & et al. (2018). The ME-WE EU H2020 Funded Project. Accessed July 15, 2021. <https://me-we.eu/the-project>.
- Järkestig-Berggren, U., Bergman, A. S., Eriksson, M., & Priebe, G. (2019). Young carers in Sweden-A pilot study of care activities, view of car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hild & Family Social Work*, 24(2), 292-300.
- Järkestig Berggren, U., & Hanson, E. (2016). Children as next of kin: a scoping review of support interventions for children who have a parent with a serious physical illness. *Child Care in Practice*, 22(3), 277-295.
- Joseph, S., Becker, S., Becker, F., & Regel, S. (2009). Assessment of caring and its effects in young people: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aring Activities Checklist (MACA-YC18)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of Caring Questionnaire (PANOC-YC20) for young carers. *Child : care, health & development*, 35(4), 510-520.
- Joseph, S., Sempik, J., Leu, A., & Becker, S. (2020).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 77-89.
- Kavanaugh, M. S., Stamatopoulos, IV., Cohen, D., & Zhang, L. (2016). Unacknowledged Caregivers: A Scoping Review of Research on Caregiving Youth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t Research Review*, 1, 29-49.
- Leu, A., & Becker, S. (2017a). A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750-762.
- Leu, A., & Becker, S. (2017b). A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750-762.
- Leu, A., Berger, F. M. P., Heino, M., Nap, H. H., Untas, A., Boccaletti, L., Lewis, F., Phelps, D., & Becker, S. (2022).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1-18.
- Lloyd, K. (2012). Happiness and Well-Being of Young Carers: Extent, Nature and Correlates of Caring Among 10 and 11 year Old School Children. *Journal of*

- happiness studies, 14(1), 67–80.
- Maclean, C., & Hay, Nicola. (2021). Young, caring, and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UWS–Oxfam Partnership: Collaborative Research Reports Series: 1–24.
- Nagl–Cupal, M., Daniel, M., Koller, M. M., & Mayer, H. (2014). Prevalence and effects of caregiving on childr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0(10), 2314–2325.
- Phelps, D. (2017). The Voices of Young Carers in Policy and Practice. *Social Inclusion*, 5(3), 113–121.
- Phelps, D. (2021). What changes for young carers? A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dedicated support provision for young carers.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8(5), 547–558.
- Purcal, C., Hamilton, M., Thomson, C., & Cass, B. (2012). From Assistance to Prevention: Categorizing Young Carer Support Services in Australia,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6(7), 788–806.
- Robison, O., Egan, J., & Inglis, G. (2017). Young carers in Glasgow: health, wellbeing and future expectations. Glasgow: Glasgow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 Robison, O. M. E. F., Inglis, G., & Egan, J. (2020). The health, well-being and future opportunities of young carers: a population approach. *Public health (London)*, 185, 139–143.
- Stamatopoulos, IV. (2016). Supporting young carers: A qualitative review of young carer servic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1(2), 178–194.
- Stamatopoulos, IV. (2018). The young carer penalty: Exploring the costs of caregiving among a sample of Canadian youth. *Child & youth services*, 39(2–3), 180–205.
- Smyth, C., Blaxland, M., & Cass, B. (2011). ‘So that's how I found out I was a young carer and that I actually had been a carer most of my life’. Identifying and supporting hidden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45–160.
- Tucker, J., Tatum, C., & Tucker, C. (1999). *On Small Shoulder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s of Former Carers*. London: Children's Society.

Action for Children,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actionforchildren.org.uk/our-work-and-impact/children-and-families/young-carers/>.

Carers ACT, 2022년 07월 06일 최종 접속, <https://www.carersact.org.au/>.

Carers Australia, 2022년 07월 06일 최종 접속, <https://www.carersaustralia.com.au/>.

- Carer Gateway, 2022년 07월 06일 최종 접속, <https://www.carergateway.gov.au/>.
- Carers Trust,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carers.org/>.
- Carers UK,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carersuk.org/>.
- Carers NSW Australia, 2022년 07월 06일 최종 접속, <https://www.carersnsw.org.au/>.
- CHUMS, 2022년 07월 08일 최종 접속, <http://chums.uk.com/young-carers/>.
- Comox Valley Youth as Caregivers Program,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facebook.com/YouthasCaregivers/>.
- Cowichan Family Caregivers Support Society,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familycaregiverssupport.org/>.
- Cowichan Young Carers,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cowichanyoungcarers.wordpress.com/>.
- Family Carers Ireland, 2022년 07월 08일 최종 접속, <https://www.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ng-carers/young-carer-projects>.
- GOIV. UK,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goiv.uk/>.
- KIDS, 2022년 07월 08일 최종 접속, https://www.kids.org.uk/young-carers?gclid=EA1aIQobChMI5IV6_qfXK2AIVLZQYCh10pwUzEAAYASAAEgK_8PD_BwE.
- Mygov.scot,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mygov.scot/>.
- Services Australia, 2022년 07월 06일 최종 접속,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
- The Children's Society,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childrensociety.org.uk/>.
- Young Caregivers Association, 2022년 07월 07일 접속, <https://youngcaregivers.ca/>.
- Young Carers Network, 2022년 07월 06일 최종 접속, <https://youngcarersnetwork.com.au/>.
- Young Carers Program,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www.ycptoronto.com/>.
- Young Carers Project, 2022년 07월 07일 최종 접속, <https://youngcarersproject.wordpress.com/online-resources/canadian-programs-for-young-carers/>.